

제주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8. 10.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www.jdi.re.kr

발간사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갖고 있고, 가용자원이 부족한 제주도에 성공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에 대한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도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자본의 투자 유치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해외 경쟁 도시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제주도가 경쟁에서 앞서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각종 조세 및 투자유치 관련 법개정을 통해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새로 만들고, 수정하는 것만으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잠재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도민과 행정기관의 서비스 등이 결합되어야 비로서 제주라는 완전한 투자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말레이시아 버차야그룹이 휴양형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H 지구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휴양형 주거단지에는 단계적으로 1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의 외자유치로 향후 제주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는 한편 투자유치 시장에서 제주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면,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행정당국의 전문성 확보와 도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에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전문인력 확보, 투자가들의 수익률 보장정책 추진,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24시간 운항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단·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관계기관의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 10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향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구성	2
II. 국내·외 지역 투자유치 현황	4
1. 국내	4
2. 국외	35
III. 제주지역 투자유치 현황 및 사례분석	48
1. 투자유치 현황	48
2. 주요 투자정책 현황	52
3. 제주지역 투자유치 사례분석	56
4. 제주지역 투자유치 개선방안(기존 연구)	62
5. 투자유치상의 과제	65
IV.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	66
1. 기본방향	66
2.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	68

V. 결 론	89
참고문헌	91
부 록	93

표 목 차

<표 II-1> 경기도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MOU 기준)	4
<표 II-2> 경기도 주요 외자유치 현황	6
<표 II-3> '08 상반기 고용규모 100인 이상 유치기업	11
<표 II-4>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4
<표 II-5> 2007년 경상남도 외국인 투지실적	17
<표 II-6> 2007년 경상남도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 현황	19
<표 II-7> 경상남도 투자촉진지구 촉진현황	21
<표 II-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	23
<표 II-9>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외자유치 현황(신규 투자)	25
<표 II-10>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외자유치 현황(증설 투자)	25
<표 II-11>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내용	26
<표 II-12> 전라남도 유치기업	29
<표 II-13> 전라남도 투자기업 지원제도	32
<표 II-14> 네덜란드의 연도별 유형별 투자유치실적	43
<표 II-15> 네덜란드의 주요 인센티브	45
<표 III-1> 관광개발분야 민자유치 현황	48
<표 III-2>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49
<표 III-3> 대기업 연수원 유치 현황	50
<표 III-4>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	50
<표 III-5> 투자진흥지구 사업 현황	52
<표 III-6>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상황	56
<표 III-7>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상황	60

<표 III-8>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관련 인터뷰 결과	63
<표 III-9> 투자자 의견사항	64
<표 IV-1> 중동 국부펀드(SWFs 실태)	71
<표 IV-2>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인하 동향	72
<표 IV-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주요 국가의 세제상 투자인센티브 비교	73
<표 IV-4>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에 체류조건	75
<표 IV-5>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사례	80
<표 IV-6> 경기도 외자유치 조직 사례	81
<표 IV-7> 네덜란드의 부처간 프로젝트 팀 사례	81
<표 IV-8> 경상남도의 투자유치 사례	84
<표 IV-9>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사례	88

그림 목차

[그림 II-1]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	7
[그림 III-1]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처리 절차(2008년)	55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부터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과 전략산업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제주도에 국제적 투자가와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입하고 동북아 대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법·제도가 필요함.
- 현 시대는 사람과 자본이 살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노마드 시대’임. 노마드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함.
- 세율이 낮고, 규제가 없으며, 노사의 갈등이 없는 ‘3무’는 투자유치의 기본임. 그리고 기업과 자본의 유치를 적극 환영하는 개방적 자세도 중요함.
-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과 비교할 때 제주자치도는 후발주자임. 따라서 이들 도시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절실함.
- 최근에 들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하나, 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투자유치 주체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회의주의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나가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
-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휴양형 주거단지에 단계적으로 18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의 외자유치로 향후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투자유치 시장에서 제주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물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함.
- 또 기업의 유치만큼 중요한 점은 제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제주지역 기업들과의 상호 보완적 상생환경을 조성해야함.
- 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씨드머니(seed money)조성도 시급함.
-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 사례조사와 제주지역 투자유치 환경분석을 토대로 투자유치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 방법 및 한계

- 연구방법은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을 수행함.

3. 연구 구성

- 제1장은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구성에 대해 다룸.
- 제2장은 국내·외 지역 투자유치 현황부문으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국내 지자체별 투자유치 현황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투자유치 현황, 주요 시사점을 다룸.

- 제3장은 제주지역 투자유치 현황 및 사례분석 부문으로 투자유치 현황, 주요 투자정책 현황, 제주지역 투자유치 사례분석, 제주지역 투자유치 개선방안(기존 연구), 투자유치상의 과제 등에 대해 다룸.
- 제4장은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부문으로 국내·외 지역과 비교, 현 투자유치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유치환경 개선관점에서 기본방향과 이를 토대로 한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을 다룸.
- 제5장은 결론부문으로 연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함.

II. 국내·외 지역 투자유치 현황

1. 국내¹⁾

가. 경기도

1) 개요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외투기업 사적조정지원제도 및 경영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외투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북핵문제, 수도권 규제, 대선 정국, 미달러 엔화가치 상승, 노사문제, 인건비 상승, 반기업정서, 반외자정서 등 대·내외 외국인 투자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조업 위주의 투자유치에서 종합 테마파크, 물류, 유통 등 서비스 업종으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유니버설스튜디오, 에코-디자인시티 등 글로벌 프로젝트 등 24건에 85억불의 투자유치를 성과시켜 민선4기 목표액 40억불을 초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

<표 II-1> 경기도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MOU 기준)

(단위: 백만불)

합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2	14,307,3	5	78	3	10,599	35	1,147,3	29	1,280,9	32	880,1	24	8,506

자료 : 경기도 도정백서, 2008

- 민선3기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97건 138억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선4기에는 전임 도지사의 실적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개발을 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이었음.

1) 각 지역 도정백서와 투자관련부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은 제조업중심의 투자유치에서 물류, 유통, 테마파크 등 서비스분야와 지역개발 대형프로젝트까지 외자유치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됨.
- 경기도는 투자 유치목표로 매년 10억불씩 4년간 총 40억불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10,000명의 직접 일자리와 간접 고용효과 감안 총 35,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는 민선3기 투자유치 실적(MOU 기준)97건에 LCD 산업관련 35건(36%), 자동차부품 21건(21.7%), IT 16건(16.5%), R&D 8건(8.3%), BT 3건(3.1%), 기타 14건(14.4%)순으로 총 138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임.
- 투자유치 추진방향은 LCD, 반도체, 자동차분야의 부품소재, 장비업체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되 물류산업, BT, 디지털 문화 콘텐츠, 항공·우주분야, 서비스(교육, 의료, 관광·호텔업, 부동산), SOC분야 등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다변화를 통해 도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방향을 외국인전용 임대단지 확충 및 외국기업 R&D센터 유치 공간 확보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과, 탄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및 철저한 투자 사후관리, 민관합동 및 중앙정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체제 강화, 투자유치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였음.

2) 투자유치 현황

- 한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사업을 독점 추진중인 USK프로퍼티홀딩스(USK)가 화성시에 31억 달러, 영국 에코-디자인시티 36억달러를 투자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음.

<표 11-2> 경기도 주요 외자유치 현황

년도	유치 기업명	투자금액
2006	미국 KL-Fenix	3천만달러
2007	미국 3M사	1억 4천만달러
	독일 엔비오	1억달러
	벨기에 VCST	3천만달러
	프랑스 포레시아	2천 600백달러
	영국 에코-디자인시티	36억달러
	USK프로퍼티 홀딩스	31억달러
2008	일본 호사야	1억달러
	미국 프롤로지스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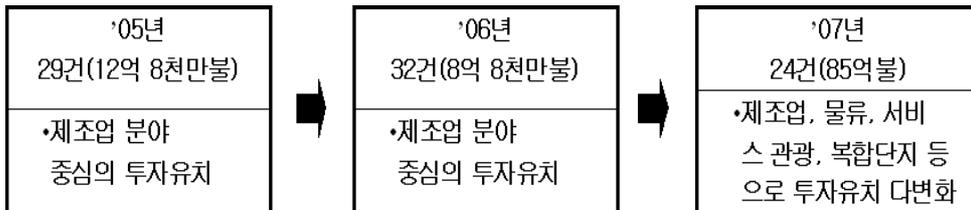
자료 : 경기일보, www.kgib.co.kr

3) 주요 투자유치 정책

(1)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 추진

-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으로 제조업 투자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향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가 지속적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류, 관광테마파크, 유통,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으로 투자유치 분야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투자유치 다변화 성과는 ProLogis: 20억불 <물류단지>, 포천Eco-design city: 36억불 <관광테마파크>, 삼성Tesco: 1억불 <물류단지>, 한국3M: 2.2억불 <제조>, USK ProParty Holdings: 31억불 <관광테마파크>, HOYA: 1억불 <LCD> 등임.
-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투자유치 추진전략별 실천방안을 이행하고자 민·관 합동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 개최, 투자유치 프로젝트 중점 관리 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에 전력을 기울임.

-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분야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제조업, 물류, 서비스, 복합단지 등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그림 II-1]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 정책

(2) 투자진흥 조직의 전문화 및 투자유치 행정능력 향상

- 투자진흥 조직의 전문화 및 투자유치 행정 능력의 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산업별로 15개 전문분야 20명의 민간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재구성 및 중요정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기능 및 성과지향의 투자진흥 조직으로 확대·개편하여 8개팀 31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였음.
- 또한 투자유치 공무원 전문성 향상 훈련을 지속 전개하여 전문가 초청강좌 67회, 전문가양성 대학원 과정운영 59명, 영어전문교육을 주4일 추진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꾀하였음.

(3) 외투기업 성공경영 지원을 위한 전략

- 외투단지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근로자에게 한·영·일 어학강좌를 실시할 예정임.
- 외투기업 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기도 외투기업 민간 조정위원회」를 통한 외투기업 노사문제도 지원할 방침임. 경영업무지원시스템에 의한 기업 지원정보의 통합화도 추진됨.

(4) 온라인 투자유치 자문시스템 구축

- 경기도 투자유치 홈페이지에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자에게 온라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법무, 회계·세무 특허, 노무, 인력, 금융분야 등 6개 분야 18개 전문법인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상에서 외투기업과 잠재 투자자에게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지정상담실은 외투기업이 18개 전문법인중 어느 한 법인을 특정하여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48시간 이내에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자유상담실은 외투기업이 전문법인을 특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담을 등록할 수 있음. 프리미엄 정책정보는 시의성 있고 유용한 법무, 특허 등 6개 분야의 공공기관 정책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5) 외투기업경영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

- 경기도는 외투기업 경영분야 지원을 위해 '외투기업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2007년 11월 구축하였음.
- '외투기업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란 법률, 회계, 노무, 인력, 특허, 금융의 6개분야 민간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자문과 기업지원 및 생활·문화 정보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임.

(6) 사적조정지원제도의 도입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안정된 기업의 경영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는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분쟁이 현실화 되어야지만 조정절차에 진입하는 국가의 공적조정제도와는 달리 예방적 조정활동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노사간의 잠재된 갈등상태에서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적조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임.
- 특히 사적조정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노사 전문가에 의한 조정단체설립에 기여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이제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적조정제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추진세력이 없어 활성화 되지 못해 왔음.
- 그러나 공모방식에 의해 전문가에 의한 민간 조정단체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노사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민간 차원의 노사분쟁 조정단체인 (사)한국조정중재협회가 탄생하였음.

(7)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의 활성화

- 한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은 관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정책의 수혜자에 의한 사업추진은 정책의 순응도를 높이고 현실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는 2006년 10월 설립한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외투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정운영, 외투기업애로사항의 접수, '외투기업의 날 행사' 개최 등이 그것임.

4) 탄력적인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개선

-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일자리 창출 및 고급 선진기술이전 등으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포상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우선 투자유치 동기부여 및 성과거양을 위해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금액의 0.1%(민간인 최대 3억원, 공무원 최대 2억원)까지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인센티브 방안임.
- 2008년도 민간인, 공무원 구분없이 투자금액의 0.1%이내 금액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나. 강원도

1) 개요

- '07년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정비와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관광·제조업분야의 상품개발(3건)과 투자유치 조직의 전문인력을 정비하였음.
- 투자유치 홍보강화를 위한 Communication Tool(홍보영상 및 인쇄물 제작) 강화 등 투자기반 정비와 확충을 통해 현재 IT, BT, R&D, 관광분야 개발사업에 10여개의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진행중인 해양심층수 개발,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9개사에 10,546천불의 외국인 투자실적을 거두었음.
 -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외자유치(풍력단지 등) : 2개사, 3,138천불
 - 기존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증액투자 : 7개사, 7,408천불

2) 투자유치 현황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All-In하여 2007년도에만 국내 120개 기업을 유치하였음.
- 세계최대 R&D기관인 미국 Battelle 연구소 유치 성공하였으며, 2008년 중·대 규모 기업유치 목표 20개 중 11개 기업을 달성하였음.

<표 11-3> '08 상반기 고용규모 100인 이상 유치기업

유치 기업명	고용인원
일화(춘천)	356명
준영상사(춘천)	310명
명신(춘천)	250명
LS전선(동해)	200명
그린화재 콜센터(원주)	130명
유비트론(횡성)	130명
대원크레인(동해)	100명
진양제약(원주)	100명
쏠라맥스(춘천)	100명
이엔에이치(춘천)	100명
파로마 TDS(횡성)	100명

자료 : 강원도 투자유치본부 2008 주요시책

3) 주요 투자유치 정책

(1) 외국인 투자기반 조성사업 추진

□ 투자가능부지 전수조사 실시

- 투자가능 부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도내 투자가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함.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 현재 조성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일정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춘천·원주·강릉 등 3개소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함.
- 투자희망 외국기업과 MOU체결, 50%이상 부지 확보후 외투자지역 지정 신청함.

업종별 유망분야의 투자상품 발굴 확대

- 관광개발 등 개발프로젝트의 경우는 투자유치 상품개발을 통한 객관적인 보고서에 의한 유치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외자유치 가능부지에 대한 투자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여 각종 투자설명회, 해외 세일즈 활동시 적극 활용함.

(2) 다양한 투자유치 정보 Source 확충

KOTRA에 상주직원 파견(1명)

-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KOTRA에 상주직원을 파견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투자정보를 수집함.

투자유치 자문기구 운영

- 외자유치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및 효율적인 자문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자문관(5명 내외) 및 외국인 투자유치 협의회(15명이내)를 운영함.

외국인 투자 유관기관의 교류 역량 강화

- 국내 외국인 투자 관련 각종 협회의 멤버십(4개)을 활용하여 투자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함.

(3) 유망분야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 내실있는 해외 투자유치 세일즈 전개는 타켓업종을 3개 권역(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테마파크 등)으로 선정하여 도 및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외 투자유치 세일즈단 파견 활동을 전개(미주, 아주, 유럽 3회)함.
- 전략업종의 투자유치활동 중점 전개는 주요 투자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및 도내 Site-Tour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외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외자유치 설명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외자유치 홍보활동(홍보 영상CD·브로슈어 제작, 배포 등)을 강화함.

4) 투자기업 지원제도

-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 위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음.(07. 12. 28)
 - 본사·공장이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3억원 → 5억원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2억원 → 5억원
- 또한 이업종교류회, 벤처기업 모임 등 소규모 밀착형 기업유치설명회 개최(7회) 등 만족과 감동을 주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 자문역으로 위촉(24명)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강원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4>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구분	내용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이전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문화산업진흥 기본0법」 제2조제1호 규정의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2. 강원도역외에서 창업하여 도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다만, 투자촉진지역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집단화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2조의2 지방기업 이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17조의 지방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것(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 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일 것 3. 제7조의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투자를 통해 상시인원을 채용한 기업일 것 ○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규투자는 건축비(토지·건물 등을 임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되, 토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규투자 고용인원수는 지방기업이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08.5.9]
제3조 본사이전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장이전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투자비용(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초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부지매입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 임대료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고용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상시고용인으로 2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제6조의2 교육훈련 보조금	○ 도지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3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3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7.29]
제6조의4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특별지원	○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 도역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5 기업투자촉진지 구 지정	○ 조례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공고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중 지구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6조의4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이전전 상시고용인원이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기업 의 신용등급 등 부실기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 또는 시군의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2.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3.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제7조2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하“투자”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3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 이상인 경우 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기업
제7조4 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기업 등의 고용보조금은 지방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2. 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중소기업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3. 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 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자료: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2008,5,9

다. 경상남도

1) 개요

- 2007년 투자유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3개사 41.3백만불(신고기준 101건 345백만불)과 국내자본 647개사 2조 5.156억원을 각각 유치함.
- 국내 실물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국내자본의 투자유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7년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는 신고기준 101건 345백만불로 2000년 이후 신고건수는 가장 많았으나, 환율하락으로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106백만불 감소함.
- 2007년까지 누계액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34건 941백만불과 국내자본 6,606개사 16조 8,114억원을 각각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함.
-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지출한 기회비용은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으로 각 기업에 지급한 142억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해 준 공장부지 762천㎡의 매입예산 864억원, 외국인 학교 부지 4.6천㎡의 매입비 6억원 등임.

2) 투자유치 현황

(1) 외국인 투자유치

- 2007년에는 총 7회에 걸쳐 일본, 유럽 및 미주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표 11-5> 2007년 경상남도 외국인 투자실적

(단위: 백만불/명)

연도	업체명	투자국	투자 금액	고용 창출	생산제품	추진상황	연간주요 기대효과
'07 (41.3)	포레시아신성델타	프랑스	7	-	자동차부품	착공	국내 69억원 합작
	SNC(주)추가	일본	4	-	자동차부품	증액투자	
	바이엘쉬트코리아	독일	25	70	LCD확산판		고용창출
	돔하우스	일본	5.3	20	돔 하우스	착공	고용창출 및 신기술

자료 :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8

(2) 국내자본 투자유치

- 환율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647개 업체 2조5,156억원의 신규 투자와 29,134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3) 산업자본 유치

- 2007년 경상남도는 제조기업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에서 사회기반시설, 관광·레저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로의 전환점을 마련함.
- 민간자본 유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개발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고성 마동농공단지(2,889천㎡, 550억원)·조선산업특구(2,645천㎡, 6,038억원), 함안 군북산업단지(1,830천㎡, 2,642억원)등의 사업에 9천억원을 유치하여 부족한 산업용지 7,364천㎡을 확보하여 공장용지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용지난 해소에 큰 기여가 되고 있음.
- 2007년도의 가장 튼 성과는 2003년 10월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12,562천㎡) 민간투자 유치로 1

조 6,235억원을 자본 유치하여 광양만권 개발을 가시화하였음.

- 또한 2005년 시범도시 탈락 후 2006년부터 재추진하고 있는 하동기업도시 유치는 시범도시와는 달리 사업시행자 요건, 구역지정 신청서류, 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류 등이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주민공청회,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청에 앞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08년 하반기 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동기업도시는 하동군 일원 1,488만㎡ 규모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스키돔, 스파, 카지노, 호텔 등의 휴양·레저시설과 문화·교육 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2020년 경 조성이 완료되면 1만5천명 이상의 인구유입과 연간 1,000만명 가량의 관광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6> 2007년 경상남도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	위치	투자액 (1억원)	고용 (명)	부지(m ²)	주생산물
	합계			16,439	19,897	8,375,447	
1	(주)지에이산업	한일균	사천시 진사읍대단지	100	50	26,126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	현진소재(주)	이창규	함안군 칠서단지	250	100	66,100	선박엔진 부품
3	(주)SYT(세양공정)	유병현	함안군 칠서단지	175	70	39,660	조선기자재 등
4	E.S리조트클럽	이종용	통영시	300	100	9,000	숙박업
5	한국화이바	조용준	함양군 수동면	2,037	3,500	795,251	
6	동우해양조선(주)	양종근	남해군 상동면	263	225	22,944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7	송죽산업	김유리	함양군 서하면	100	10	2,122	식품첨가물제조
8	세경조선해양(주)	김길상	고성군 동해면	105	45	29,064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9	덕산약품공업(주)	홍석관	양산시 유산동	100	45	6,273	석유화학, 고무
10	(주)대한테크	신동훈	양산시 북정동	200	30	21,609	금속단조제품
11	영성산업	임해자	양산시 상북면	900	4	747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
12	(주)알켄즈폴리머	이상국	창녕군 계성면	143	32	18,329	일반용도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3	(주)세진인텍	김병태 구차진	김해시 주촌면	139	60	14,983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14	(주)케이프	김종호	양산시 상북면	850	74	135,219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15	(주)태림	임채진	양산시 어곡동	100	42	6,029	강관제조업
16	르노삼성자동차(주)	장마리 위르 띠제	함안군 법수면	1,700	30	85,491	자동차부품제조업
17	현대중공업	최길선	합천군 대방면	2,000	2,000	3,076,997	연수원
18	지리산온천랜드	김종업	합천군 가야면	100	100	272,000	온천개발
19	동우금송조선	양종근	남해군 삼동면	265	300	44,470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20	대송산업개발	이윤후	하동FEZ	754	10,000	992,000	개발사업
21	유니슨	김두훈	사천시진사단지	200	160	290,400	풍력발전설비
22	(주)동훈	김정동	창녕군 장마면	1,000	350	1,983,480	골프장
23	(주)메이퍼어리리조트그룹	장필균	거제시 하청면	4,000	1,000	140,782	리조트
24	(주)성광	이호	고성군마동 농공단지	555	1,500	288,700	조선기자재
25	산청한방친환경식품	전상수	산청군생비 량면	103	70	7,671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8.

3) 주요 투자유치 정책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임대제공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일정기간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오고 있음.
- 이것은 기업의 창업 투자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부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임.
- 경상남도는 1999년부터 꾸준히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를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투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국비와 지방비 등 총 8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 총 762,161m²를 확보하여 임대해 오고 있음.

(2)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정비

- 1999년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외 소재 기업의 도내 이전 및 창업을 촉진코자 지금까지 12개 지구 2,658,740m²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였음.
- 그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고, 미분양 투자촉진지구 구역이 불명확하여 2005. 6. 16에 12개 지구 2,658,740m²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음.
- 이 중에서 9개 지구 2,006,880m²를 지정 해제하고, 3개 지구 651,860m²로 축소하였음.

- 반면에, 사천일반산업단지 2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984,004㎡를 신규로 지정하였음.
- 그리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개 지구로 면적은 1,635,864㎡이나 2007년말 분양이 완료되었음.

<표 11-7> 경상남도 투자촉진지구 촉진현황

(단위: 평)

시·군별	촉진 지구명	지정면적	비고
계	4개소	1,635,864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 1단지	349,423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 2단지	984,004	
함안군	칠서지방산업단지	295,092	
거창군	당산농공단지	7,345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8

(3)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 2004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법령상으로 공장부지의 임대료가 어려운 국내기업에게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하여 창업초기 비용을 경감해 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
- 「공장부지 50% 융자지원」 제도는 기업의 요구에 의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도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농촌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이전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시·군과 매칭펀드로 5년간 무이자로 융자(3년 균분상환)해주는 제도임.
- 2007년 말 6개사에서 278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개 기업 18억원을 상환받았음.
- 토지관련 규제증가 및 지가상승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업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여 2007년도에는 목표를 당초 2010년 350억원에서 2011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키로 상향조정하였음.

- 2007년말 투자유치기금 조성금액은 340억원으로 2009년부터 융자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추가 출연할 계획임.

(4) 외국인투자유치 PM(Project Manager) 지정 · 운영

- PM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운영자로서 2004년 4월 도입하여 외국인 잠재투자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신규 또는 증액투자를 돕고 있음.
- PM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별로 Invest Korea에 신청하면 PM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OTRA 사장이 지정하며, 자격은 Invest Korea 직원, 공무원 또는 투자유치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로서 KOTRA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부여함.
- 투자유치팀장에 이어 해외기업담당을 PM으로 지정하여 AKEMA(프랑스)사 유치 등 7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2007년 중 투자유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기업담당 외 2명이 PM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PM자격 취득자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4) 투자기업 지원제도

- 경상남도는 투자유치 추진시책으로 공장부지 매입비 50% 무이자 융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기업은 창업 또는 도내로 이전하는 제조업체임.
- 투자액 50억이상 & 1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 (市지역 100인이상, 郡지역 50인 이상 고용) , 투자액 50억이상 & 원재료 50% 이상을 도내 조달하는 기업

- 지원대상은 중점유치 첨단. 전략업종이며, 재원은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함.
-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비의 50% 범위이며, 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경상남도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음.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

구분	내용
제16조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 국내기업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03.30>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30>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이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도외기업의 본점 도내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03.30>
제20조 보조금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실사와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제21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 제10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0.03.30>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1999.11.04, 2000.03.30> 3.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1999.11.04>
제24조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자료: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08.7.3

라. 전라북도

1) 개요

- 2008년에 유가공 분야 세계 1위의 식품기업인 프랑스 다논 및 세계 3대 태양광 발전기업인 독일의 솔라월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 2008년 상반기에 美 LAS Vegas 해양리조트사업 투자 관계자 등 21개의 해외 투자자가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여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및 새만금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전라북도의 외자유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반기에 PF전문가를 영입하고, 2008년 상반기에 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현금지원을 국내의 이전기업에 준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함.

2) 최근 3년간 외자유치 현황

- 2008년 유가공 분야 세계 1위의 식품기업인 프랑스 다논 및 세계 3대 태양광 발전기업인 독일의 솔라월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

<표 11-9>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외자유치 현황(신규 투자) (단위 : 천\$, 명)

구분	'08년 (3월현재)	'07년	'06년	'05년	비고
기업수	2	8	0	1	
투자액	220,000	102,191		2,650	
고용인원	700명	966		4	

자료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보도자료, 2008.3.27.

<표 11-10> 전라북도 최근 3년간 외자유치 현황(증설 투자) (단위 : 천\$, 명)

구분	'08년 (3월현재)	'07년	'06년	'05년	비고
기업수		2	5	2	
투자액		230,053	38,553	5,960	
고용인원		256	220	30	

자료 : 전라북도 투자유치과, 보도자료, 2008.3.27.

3) 주요 투자유치 정책

(1) 조직 구성 및 자문단 운영

- 전라북도는 민선 4기 핵심 도정목표인 기업유치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 위원회,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단, 도내 기업유치 자문단 등 3개의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함.
- 새만금개발 및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금융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가속화하는 투자유치보좌관제를 운영함.

4) 투자기업 지원제도

-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1>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내용

구분	내용
제23조 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3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 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3조의1 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도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제3항을 준용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식품관련제조업 <개정 2006. 12. 8>

	<p>3. 첨단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도 또는 정부용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다.
제23조의2 고용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8>
제23조의3 교육훈련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 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 훈 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6. 12. 8>
제24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단위사업장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 를 얻어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도지사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06. 12. 8> ○ 도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도내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대규모 창업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p>제24조의3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p>	<p>○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 이상 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 액의 100분의2번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p> <p>○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내의 낙후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신규로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p>
<p>제25조 관광사업투자촉진 위원회 설치</p>	<p>○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 6. 13></p>
<p>제30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p>	<p>○ 도지사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 6. 13></p>
<p>제31조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p>	<p>○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p>
<p>제32조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p>	<p>○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p>
<p>제33조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p>	<p>○ 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p>

자료: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2008.6.13

마. 전라남도

1) 개요

-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를 운영하여,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자문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둠.

2) 투자유치 현황

- 광주, 담양, 장흥 지역 등이 13개 기업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표 11-12> 전라남도 유치기업

년도	유치 기업명
2008	(주)유니백
2008	(주)세신앤이도
2008	(주)넥서스 카운티
2008	(주)신안메이드
2008	(주)아플로테크
2008	(주)선인
2008	(주)안성씨푸드
2008	(주)대한트랜스
2008	(주)황금마리나
2008	(주)필룩스
2008	(주)루미솔
2008	(주)익스틀
2008	(주)성산기업

자료 : 전남일보, www.jnibo.com

3) 주요 투자유치 정책

(1)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자문 협력

-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년도별 투자 시책보고 및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계획,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 등 전남도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 투자유치 관련 정책개발, 평가 및 경제살리기 혁신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유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투자유치사업과 투자유치 시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
-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

받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적인 투자유치 자문관들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투자유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투자유치 제도 및 투자지역을 견학하여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및 시·군 공무원에게 현장감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 투자유치 인지도 제고와 투자환경을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물 제작, 도 D/B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Mailing System 홍보물 전송, 라디오·TV·신문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해외 교포에게 현지에서 발행되는 교포 신문을 통하여 투자환경, 주요 프로젝트 등을 적극 소개 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4)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를 포함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회사별로 PM을 지정, 분기별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함.

(5)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KOTRA)의 ON-line을 활용하여 전라남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 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통상, 교류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전라남도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 교류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함.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KOTRA,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EUCCK(유럽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교환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6) 투자유치지원시스템 구축

- 투자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업착수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3차원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투자사업 조감도를 배치해 보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대형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음.

4) 투자기업 지원제도

- 기반시설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지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표 II-13> 전라남도 투자기업 지원제도

구분	내용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 - 법인세·소득세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취득세·등록세 : 15년간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시군조례에 따라 15년까지 연장) · 수도권 지방이전지원 - 법인세 : 5년간 100%, 이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창업중소, 벤처 도내기업 - 법인세·소득세 : 4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 2년간 면제 - 재산세·종토세 : 5년간 50% 감면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도내 중소제조업체, 업체당 6억원 이내(시설자금 5, 운전 1),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상환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중소벤처기업, 기술유망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자금 4, 운전 1),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상환, 연리 3.0%(고정금리)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체, 업체당 5억원 이내(시설 4, 운전 1),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상환, 연리 6.40%(변동금리) ○ 은행협조용자 · 경영안정자금 - 도내 중소제조업체, 고나광호텔, 도지정 외국인숙박업소,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지식기반서비스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업체당 3억원 이내(매출액 기준 50% 범위내), 2년거치 일시상환, 은행금리는 은행과 협약 금리, 이차보전금 연2.0% · 소상공인 창업자금 - 벤처, 소규모제조업 및 가공식품업 등 창업자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이수자 (일반음식업 및 태양광발전업은 제외),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은행금리는 은행과 협약 금리, 이차보전금 연2.0%
기업 one-stop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 지원센터(Invest Support Center)운영 - 기업유치 상담에서 부터 공장건립까지 One-Stop Service 제공 - 관련부서간 협의 및 지원방안 Package화 ·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 운영 - 정부, 도·시군 중소 기업 지원시책 전파, 홍보 -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렴, 신속처리 - 중소기업 관련 민원 접수처리 대행

자료 : <http://www.jeonnam.go.kr/kr/invest/>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투자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기업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대주주인 경우 · 지원한도 - 외국인 투자 금액의 50%, 단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100% 이내 -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 재투자금액의 합이 25% 이내 · 지원액 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 ·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 : 분양가 차액(정상 분양가)의 50%까지 지원 -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산업(1백만불) 100%, 일반제조(5백만불) 75% - 자유무역지역(산단형, 공항형, 항만형)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산업(1백만불) 100%, 일반제조(5백만불) 75% - 개별입지 : 토지매입 후 임대(업종,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감면)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1인당 월50만원이내 6개월내 · 교육훈련보조금 -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시 1인당 월 50만원이내 6개월내 · 시설보조금 -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 내(도 자체) · 컨설팅 비용지원 -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금의 50% 범위 내(도 자체)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기업 도내이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면서 -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내로 이전하고, 이후에도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한 개 기업당 100억원 한도 · 지원액 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 · 입지보조금 - 산업단지내 부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매입·임대한 경우 50% 범위내 지원 ·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 6개월 범위내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이상 신규 고용 위한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 범위내 지원

자료 : <http://www.jeonnam.go.kr/kr/invest/>

구분	내용
신규투자 고용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체(???) - 신규투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 창출 기업 · 보조금 지급 - 지원액 : 최소 신규고용규모 초과 1인당 월 50만원이내 2년 이내 - 지원한도 : 신규고용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지원액 결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 제조업 - 소기업(1~49인)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신규 5천만원 이상 투자, 최초 1명 이상 고용, 신규고용인원×50만원이내×24개월 - 중기업(50~299인), 신규 3억원 이상 투자, 최초 1명이상 고용, 신규고용 인원 × 50만원이내×24개월 - 대기업(300인이상), 신규 20억원 이상 투자, 최초 30명 이상 고용, 20명 초과인원× 50만원이내×24개월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도내에서 2007. 1. 1부터 3년간(2007~2009년) 창업기업으로 창업투자금액 인정기간내에 설비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원)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2008 ~2010년 - 지급기간 : 2008 ~2012년(기간내 3년간 분할 지급) - 지원금액 : 최고 10억원(투자금액의 10% 이내) - 선정 및 지급 방법 창업여부 및 투자사실 확인과 함께 현장 실사 중기청 '창업투자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창업투자금액 산정 및 지원금액 결정후 3년간 분할하여 지급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기업 - 도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 20억원 이상 투자하였거나 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 지원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개 기업당 50억원 한도 · 지원 방법 :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결정하여 지원 · 입지보조금 - 개별입지 : 5,000㎡ 이상 매입시 매입비의 30% 범위내 3억원 한도 - 산업단지 : 정상 분양가의 50% 지원 · 고용보조금 : 신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훈련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 지원 · 시설보조금 : 20억원 이상 공장시설의 신·증설시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5% 범위내 · 이전보조금 : - 공장시설 이전 : 이전 비용의 10% 범위내 - 본점·본사 이전 : 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내

자료 : <http://www.jeonnam.go.kr/kr/invest/>

2. 국외

가. 아일랜드

1) 개요

- 아일랜드는 유럽국가 가운데 대규모의 해외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현재 1,200여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1995년~2004년 말까지 1,393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음.
- 아일랜드는 1991~2000년 기간 중 약 9%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임. 이와 같은 고성장에 힘입어 1988년 1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3만 달러에 달하였음.
- 목표지향적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보통신, 제약, 의료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개발의 효과가 큰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추진하였음. 소프트웨어 생산기업과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해외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하고 있음.
- 아일랜드가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적 지원, 양질의 노동력, 낮은 임금수준, 낮은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낮은 규제비용 등의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임.

2)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요인²⁾

(1)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

-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해 유럽 최저의 동일한 12.5%의 법인소득세를 적용함.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빠른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2) 개방 확대 및 기업친화적인 정책

- 아일랜드는 경제자유지수가 매우 높은 활력 넘치는 국가 중 하나로 아일랜드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도가 1980년 72개 국가중 24위, 2005년도에는 141개국중 9위로 대폭 개선됨.
- 아일랜드의 과감한 개방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였고 IDA는 건축 개발승인과 환경통제허가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인투자 업무를 돕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

(3) 노사협약에 따른 노동시장의 안정

-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연대협약은 지난 2006년 제7차 협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지속되면서, 아일랜드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본틀로 작용함.
-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임금상승률,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은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함.

2) 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2008.7.

(4)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지원

-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R&D정책을 추진함.
- 연구·개발세액공제, 지적재산권 세제혜택, 자본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 아일랜드 R&D 정책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포함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함.

나. 싱가포르

1) 개요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미국 등과 같은 최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이른바 '싱가포르 21'을 추진하며서, 기업, 금융, 관광, 교통, 첨단산업, 비즈니스 등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03년에 싱가포르 비전 2018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중임. 비전 2018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인재와 투자확보를 위한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장기발전 목표를 'A Globalised, Entrepreneurial and Diversified Economy'로 설정해 놓고 있음.
- 싱가포르를 재창조(remaking)하고 upgrade하여 재능·기업·혁신의 중심도시, 또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국제화된 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임.
- 향후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계시키고 싱가포르를 전세계의 고도 기술자, 경영인, 기업가, 창의적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우수인력의 아시아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세계 일류도시(leading global city)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Economic Review Committee는 개방화의 확대, 경쟁력 및 유연성 제고, 기업가정신의 제고, 성장의 양축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우수 인력의 양성, 구조조정 등 6개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제시함.
- 이러한 전략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강화와 제조업의 지식 및 연구 집약화에 주력함으로써 싱가포르를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로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2) 투자유치기관³⁾

- 싱가포르의 중심 투자유치기관은 EDB(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新加坡經濟發展局)임.
- EDB는 한국의 Invest KOREA와는 달리 국내와 해외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발전 추진을 하는 기관임.
- 싱가포르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함.
- 따라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구분 없이 전략적 유치산업의 투자를 유도함. 즉,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만, 외국인투자라는 사실 보다는 싱가포르 경제 발전의 기본 정책방향과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큰 역할임.

3) 조세지원 제도⁴⁾

- 내·외국인 구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특정 지역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3) Invest KOREA, 한국·싱가포르·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

4)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2007.

두고 있지 않음.

- R&D허브 및 금융허브의 육성과 지역운영본부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해외소득에 대해 광범위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One-Tier 시스템의 적용으로 거주자 기업이 지급하는 모든 배당에 대해 모든 수준의 주주 입장에서 세금이 면제됨.
-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율 인하와 상품 및 서비스세 인상
 - 2008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20%에서 2%포인트 인하되어 18%세율이 적용되며, partial tax exemption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역시 10만싱가포르달러에서 30만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함.
 - 싱가포르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했음.
- 맞춤형 조세제도
 - 외국인 직접투자관련 조세특례규정들은 주로 경제확장인센티브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법에는 투자인센티브별로 포괄적인 한도만이 규정되어 있고, 감면기간이나 감면기간의 개시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외국인투자자와 싱가포르 정부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됨.
- 개척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업무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주관하고 있음.
 - 인센티브 신청 요건을 만족한다하여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자국내의 경제적인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함.
 -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수혜범위, 기간 등은 경제개발청의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다. 중국

1) 개요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외국인투자 유치국가로 부상하였음.
 - 특히 1992년 이후 5개 경제특구에 국한되었던 우대조치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투자는 급속히 증가함.
 - 1991년 4억달러에 그쳤던 FDI 유입액은 1993년 27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400~600억 달러 수준을 지속함.
 - 2003년에는 535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함.
-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변하고 있음. 높은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로 투자재원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는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2)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주요 내용⁵⁾

□ 세금감면 축소와 세무조사 강화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적용되던 다양한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계개혁을 추진중임.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음.

5) 삼성경제연구소,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CEO Information, 2006.7.19.

□ 반독점법 제정

- 중국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199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10년 이상 지연된 반독점법 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배경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감독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 중국정부는 협조 또는 방임해 왔으나 최근 노조설립 압력, 단체협약 체결 요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기술이전 및 R&D투자 요구 증가

- 중국정부가 1990년대 이래 추진해온 '시장과 기술교환' 전략이 시장만 내주고 기술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됨에 따라 선진기술 이전,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투자허가시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편 기술이전시 더욱 큰 혜택을 주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특혜제공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

-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세율 추가인하, 공장부지 임대 제공 등 우대정책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이로 인해 세수감소와 무문별한 공업단지 확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일련의 특혜제공 행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음.

라. 네덜란드⁶⁾

1) 개요

(1) 유럽물류 중심국

- 유럽 단일시장 도입 이후 네덜란드는 외국기업들의 유럽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 및 유럽지역본부(European Headquarter) 입지로 주목함.
- 네덜란드 국제물류협회(HIDC, 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물류입지의 강점은, 우수한 인프라, 좋은 기업환경, 발달된 물류서비스, 친기업적인 정부정책 등임.
- HIDC의 자체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5개국 이상을 관할하는 EDC(유럽물류센터) 점유율을 유럽국가간에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 51%, 벨기에 18%, 독일 11%, 프랑스 8%, 영국 8%, 기타 4%로 나타났다. 유럽물류센터의 50% 이상이 네덜란드에 설치되어 있음.

(2) 제 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이용

-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센터의 기능을 하는 기업도 많이 설립되어 왔음.
- 이는 네덜란드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제 3국 에 투자할 때 네덜란드에 별도

6)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2007 네덜란드 투자 핵심 가이드, 2007.

의 법인을 설립 한 후 이를 통해 제 3국에 투자하는 경우임.

- 네덜란드 기업명의로 한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것이 이와 같은 제 3국 기업의 네덜란드 우회 투자분임.
- 이는 네덜란드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관대한 과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기도함.
-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서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함.

(3) 동구권으로 투자거점 이전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질 FDI 감소 추세

- 지리적 이점 및 발달된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 투자유치실적은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동구 및 중국지역 등으로의 투자 거점 분산 추세를 반영함.
- 유럽의 투자유치강국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실적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는 동구권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환경 악화, IT 서비스부문의 투자유치 감소, 숙련노동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 공간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표 11-14> 네덜란드의 연도별 유형별 투자유치실적

(단위: 백만유로)

투자구분	2002	2003	2004
지분투자	5,048	12,946	2,251
재투자이익	-1,112	4,617	4,605
기타	22,669	-431	-10,564
합계	26,604	17,128	-3,708

자료: UNCTAD WID Country Profile, Netherlands

(4) 중서부 유럽 거점으로서 투자매력은 여전

- 네덜란드 투자유치 강점분야로는 IT, BT, 화학,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부품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산업은 네덜란드 본토 기업들의 활동이 왕성하거나 물류허브로서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로서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FDI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다국적 기업들이 동구 및 러시아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물류거점을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대한 투자여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중서부 유럽의 물류중심지로서 네덜란드의 매력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서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네덜란드 투자도 최근 증가세임.

2) 투자유치제도

(1) 주요 투자법 개요

- 네덜란드에는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금지, 제한규정이 없음. 내국인과 외국인 동일대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임.
- 다른 투자유치 선진국과는 달리 별도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없으나, 내외국기업 구분 없이 기업유치를 위한 몇 가지의 인센티브 제도는 운영하고 있음.

(2)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추 경우 외국인의 현지거점 설치, 법인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분야에는 로테르담항만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이 왕성하며, 1:1 협상에 의거 외국기업 유치에 매진함.

(3) 인센티브

-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과 자국기업간의 차별이 없으며, 외국기업이 네덜란드에 투자할 때의 명문화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특정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정책차원에서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의 인센티브 수혜 사례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수혜방법 등은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함.

<표 II-15> 네덜란드의 주요 인센티브

구분	내용
중앙정부의 IPR (지역투자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 · Greenfield 투자가 주요 대상이며, 네덜란드 북부지역이 주요 수혜지역 ·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의 25%는 자기자본으로 투자
EU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F-II(European Social Fund-II)는 신규 채용, 실업직원 채용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EFRO(European Fund for Regional Development)는 유럽연합 조건에 부합시 제공
수출촉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D(Netherlands Foreign Trade Agency)에서 시행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과 유사 · PSB(신규 수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PESP(초기 수출의 타당성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 EKV(수출신용보험제도) 등
고용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고용사무소(Arbeidsbureau)와 협력하여 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수혜 가능 · 종업원 교육을 위해서 ESF 등 프로그램 수혜 가능
R&D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S: 환경기술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 · TOP: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s Decree에 의해 신규개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주기 위해 최대 25%까지 비용지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FDI 인정여부 및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주식취득의 경우로서, 회사설립, 인수합병의 형태를 포함하여, 관계회사간 이루어진 모든 금융거래(대출, 재투자이익잉여금, 그룹사간 계정구조 변경) 및 부동산 거래 등을 모두 직접투자자로 인정 ·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직접투자가 에너지 절약형 자산 구입, 환경친화적 자산 구입, 영화(film) 제작산업 투자, 신기술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 및 해당 종업원 임금 등과 같이 특정항목에 속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

자료 :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2007 네덜란드 투자 핵심 가이드, 2006.

(4)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네덜란드는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 또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
-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윤에 대한 과세는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영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끝난 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 네덜란드에서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면제, 네덜란드로 지불된 분에 대해서도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함. 세계적인 가수나 영화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를 네덜란드 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이유도 로열티 비과세제도를 겨냥함.
- 과세율 사전 설정 가능. 관계회사간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과세대상 이윤을 사전에 결정하는 시스템임. 해당 과세대상 이윤과 과세율을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은 물론 기업의 재무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저율의 원천세 적용을 위해 세계적인 조세협약 유지 확대. 네덜란드는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광범위한 과세협약을 체결. 네덜란드가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네덜란드기업은 유리한 세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3. 주요 시사점

-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제조업 유치중심에서 서비스기업 유치 중심으로 전환. 경상남도, 경기도 등은 제조기업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에서 사회기반시설, 관광·레저 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민간전문가로 임용한 사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는 물론 해외의 CEO를 직접 찾아 다니며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국내·외 기업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망기업 정보수집,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에 있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적인 투자전문 컨설팅사와 지역의 투자환경 조사를 실시로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도 증대 및 타깃기업 발굴 등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하거나, 투자유치 담당부서 공무원이 기업 상시방문 체제로 전환,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원범위 확대,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구분 없이 전략적 유치산업의 투자를 유도함. 즉,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만, 외국자본이라는 사실 보다는 싱가포르 경제 발전의 기본 정책방향과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큰 역할임.

Ⅲ. 제주지역 투자유치 현황 및 사례분석

1. 투자유치 현황

가. 관광개발분야 민자유치

- 2011년까지 관광개발분야 투자계획(12조 9,597억원)의 94%를 달성함.

<표 Ⅲ-1> 관광개발분야 민자유치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사업승인		사업예정자지정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사업수	투자액
계	54	122,739	43	102,277	11	20,462
관광개발	33	99,893	26	81,858	7	18,035
골 프 장	21	22,846	17	20,419	4	2,42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내부자료, 2008.
주) 투자예정액 포함금액임. '02~'08.8.25일 현재 자료

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 외국인투자는 거의 전무하였다가, 1~2년 전부터 8개 사업이 진행중이나, 아직 실투자액은 약 700억원에 불과함.
-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1조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전체 외자유치 실적의 75%에 달할 정도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자유치의 다각화와 실질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Ⅲ-2>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투자사업	투자기업	투자규모	추진상황
8개사업		2조6,697억원	
컨벤션앵커호텔	홍콩, (주)타갈더 (중문관광단지)	2,847억원	• 토지매입 완료(192억원) - '07.6.28 착공(기반공사 18%) - 변경사업계획 교통영향평가 협의중
폴로승마장	싱가폴, (주)폴로컨트리클럽 (구좌 행원)	232억원	- 도의회 통합영향평가협의완료 - 개발사업착공(7. 17)
메디컬사업 (라이브캠)	홍콩, 보타메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60억원	• 60억원 외자도입
반도체 사업 (EMLSI)	대만, 원본드 (건설회관)	141억원 (유상증자)	• 주식 매입 완료(141억원)
고급휴양시설 (ADG)	미국, ADG사 등 (제주시 애월)	3,267억원	• 사업예정자 지정('07.4.16) - 이행계획서 제출('07.10.15) - 8월중 지구단위, 영향평가자료 제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버자야 (서귀포시 예래)	18억불 (1조8천억원)	• 합작법인 등기(8.8, 300억원) - 합작법인 현판식(8.20)
신화역사공원 (H지구)	버자야랜드 (서귀포시 서광리)	2억불 (2,000억원)	- 200만불 투자이행서 제출 - J지구 ⇒ H지구로 투자계획 변경 - '08.8.20 MOU 체결
M 박물관	리플리코리아 (중문관광단지)	150억원	- 초기자본 400만불 예치('08.5.26) - 부분 개축허가(6. 5) - '09. 3월 개관 예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내부자료, 2008.

다. 대기업 연수원 유치 현황

- 설립이 확정된 연수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행정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 운영하고 있음.
- 유치 협의 중인 연수원에 간부급 공무원이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을소유 토지 등 연수원 적정토지 특성자료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 또 연수원 미보유 국내 100대 기업, 공기업, 전국회원보유 단체 등 기업과 단체에
제주연수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표 III-3> 대기업 연수원 유치 현황

투자사	투자사 규모	위 치	추진상황
농협중앙회 (300억원)	5,082개 점포 · 247천명	· 별도부지 마련중(66만㎡)	· 토지 매입 협의중 · 서귀포시 표선면
새마을금고연합회 (400억원)	1,603개 점포 · 115천명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94천㎡)	· 연수원 기공식(7. 18) · 조경, 전기/소방 입찰 완료 · 현장사무실 신축 및 부지정리중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내부자료, 2008.

라.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

- 다음커뮤니케이션, 성도그린 등을 이전하여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큼.

<표 III-4> 수도권 기업 이전 현황

투 자 사	투자규모	위 치	추진상황	비 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매출액 2,154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27,873㎡ (38,681평)	첨단과 학기술 단지	'08. 6월 부지매입완료 (112억원)	R&D센터 착공(12월) -연면적 13,200㎡ -230억원 투자
“(주)다음서비스” -포털다음의 서비스 모니터링, DB관리	자본금 20억원	제주시 (현대해 상)	3월부터 운영중	· 1,000명 고용예정 -286명 고용(도민 278)
(주)성도그린 -경기안양, 매출액 139억원 -농산물가공, 녹즙등 생산	부지 9,536㎡, 공장 4,809㎡, 투자비 97억원	애월 신업	'07.12.27준공 공장 운영중	· 65명 고용 예정 · 우유 4,000천톤 가공 · 보조금 지원 :15억원
(주)키멘슨전자 - 경기 부천, 매출액 197억원 -전자기타 앰프생산	부지 28,444㎡ 공장 9,997㎡ 투자비 171억원	애월 어음	'07.12.27준공 공장 운영중	· 200명 고용 예정 -125명고용(도민 90) · 보조금 지원:23억원

마.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 국내·외 투자자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7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음.
- 관광을 중심으로 한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주특

별자치도 특별법 제217조에 근거하고 있음.

-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이 되면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은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며, 3단계 제도개선 시 관광식당업이 추가되어 22개 업종임.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국 세 : 관세 면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0년간 면제
 - 부담금 :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50% 감면
 - 국공유지 : 50년간 임대, 임대료 75%범위내 감면, 매각시 20년 분할납부 등
-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제주동물 테마파크, 제주비치 힐스 리조트, 해비치 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 박물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묘산봉 관광 개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임.

<표 Ⅲ-5> 투자진흥지구 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지정면적(㎡)	투자비(억원)	지정일	주요시설
1	제주동물테마파크	581,050	560	'05.7.13	동·식물원, 가족호텔 등
2	제주비치힐스리조트	1,989,201	3,678	'06.11.27	동물원, 연수원, 숙박시설 등
3	해비치관광호텔	26,303	1,749	'07.6.20	숙박시설
4	나비곤충어류박물관	27,466	167	'07.6.20	전시관, 체험학습장 등
5	성산포해양관광단지	4,177,000	3,870	'07.12.26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박물관, 수영장, 미술관 등
6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44,000	18,000	'07.12.26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건강센터 등
7	묘산봉관광개발	2,575,903	6,235	'08.4.23	숙박시설, 영상단지, 연수원, 박물관 등

2. 주요 투자정책 현황

가. 마을투자유치단 구성·운영

- 현재 마을투자유치단이 구성된 마을은 총 17개 마을로서 보유토지 면적은 18,205천㎡임. 제주시 6개 마을(6,310천㎡), 서귀포시 11개 마을(11,895천㎡)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보유 토지 홍보 리플렛을 2008년중 제작하여 대외홍보에 나설 예정임.
- 2009년부터는 마을보유 토지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여 홍보에 매진함은 물론, 마을주민이 원하는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임.

나. 관광개발 투자자 PM(Project Manager)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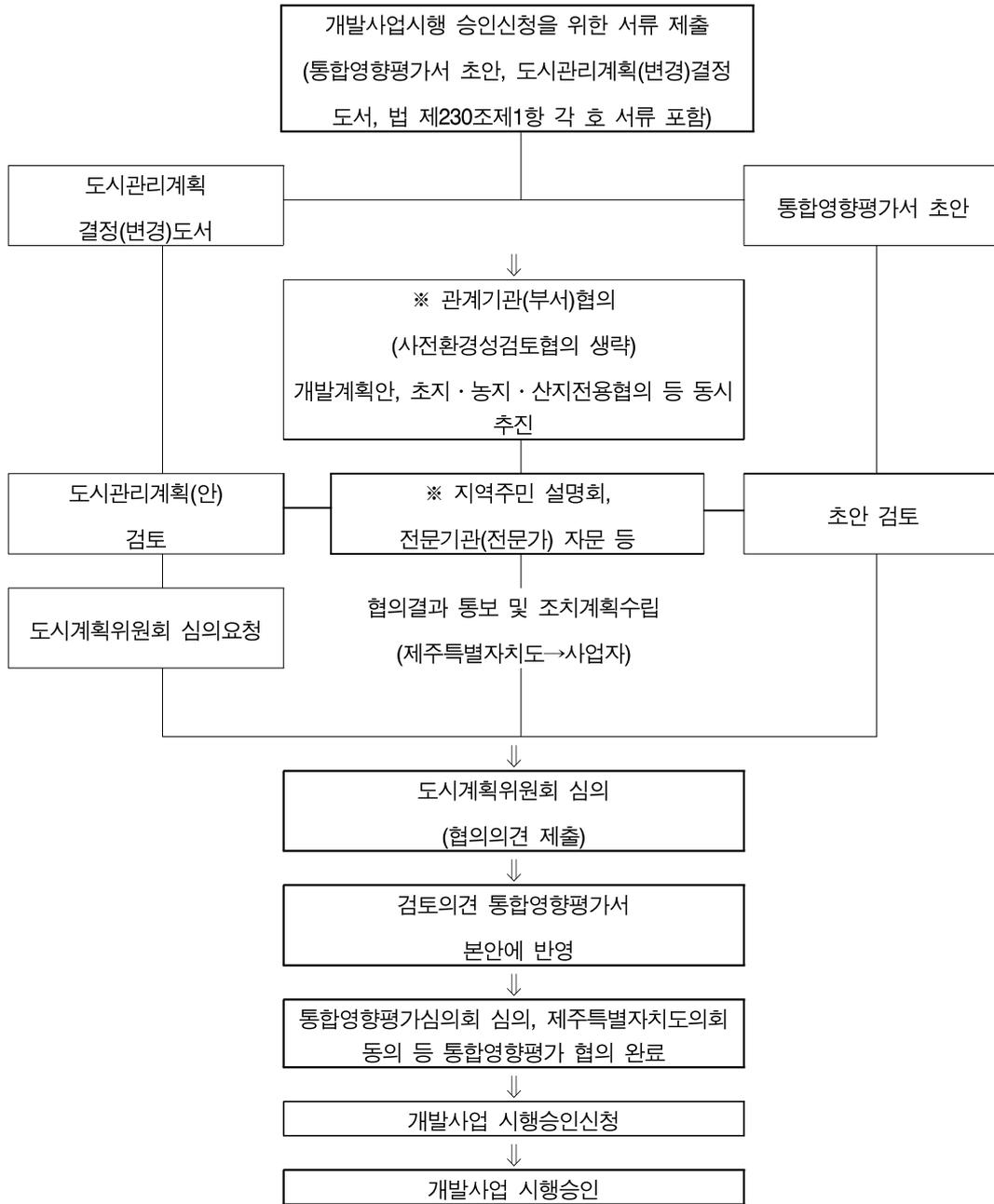
- PM(Project Manager) 제도는 1투자기업에 1공무원으로 담당을 지정 하는 Man to Man 방식임.
- 투자상담 → 사업계획 진입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통합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사업승인 → 착공 및 준공 → 사업운영 → 사업계획 변경 등 일련의 투자기업의 탄생과 운영과정 등 모든 이력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등 더욱 친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임.

다.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비축제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08년도 149억원) 각종 공공용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사한 개발이 가능한 토지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지(필지당 1만㎡이상)는 290건, 19,732천㎡이며, 마을소유 및 마을공동목장 (연접 1만㎡ 이상) 152건, 43,579천㎡임.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공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3자 실무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 업무연계를 강화함.
 - 협약기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개발사업용 토지 공동 비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토지비축 재원이 부족한 제주도의 토지비축에 탄력을 받게 되었음.
 - 무엇보다도 협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를 협약기관 간 상호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용 토지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

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처리 절차

- 2007년까지는 민간투자 관광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통합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시행승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관광지 등 각종 민간투자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통합영향평가 협의와 관계기관(부서) 협의 절차를 완전 통합해야 가능하다는데 착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음.
- 이 규칙에 의하면,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서 및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서류 등을 일괄 제출받고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은 '06년 7월 이전에는 22개월 → '06년 7월 이후에는 13개월 → '08년 이후에는 10개월로 단축되었고, 2009년에는 8개월로 단축할 예정임.



[그림 III-1]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처리 절차(2008년)

3. 제주지역 투자유치 사례분석

가. 휴양형 주거단지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5~2015.4
- 면 적 : 743,700m²(22만평)
- 주요 시설 : 5성급 호텔, 레지던스호텔, 상업시설(카지노호텔, 쇼핑몰, 실내 ARENA), 특수시설(건강센터, 재활센터, 예방의학센터 등)
- 총 사업비 : 약 18억불

2) 사업 추진상황

<표 III-6>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상황

년도	내용
2007.7	· 말레이시아 Berjaya(버자야) Group과 MOA 체결
2007.10	· MOA개정서 체결 및 미화 2백만불 예치금 수령
2008.4	· 합작계약 체결
2008.7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승인 및 외국인투자 신고
2008.8.4	· 합작법인 자본금 미화 24,300천불 입금
2008.8.8	· 합작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외투기업 등록
2008.8.20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출범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자료, 2008.

3) 투자유치 과정 및 성공요인

□ 외국인투자 태스크포스팀 운영

- 버자야그룹의 투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2월 『화교자본유치 TF 팀』을 구성하였으며, 버자야 그룹이 확신을 갖고 빠른 시기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버자야그룹 감동서비스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음.
- TF팀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및 인·허가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제도 및 진입도로 지원, 사업계획 자문 등 행·재정 지원을 통한 투자자 걸림돌을 해소함.

□ 투자자 요구 적극 수용

- 버자야 그룹은 외국인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및 공동투자의 형식을 병행 등을 요청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였음. 합작법인 버자야리조트(주)를 설립하였으며, 버자야레저 243억원(8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억원(19%)를 각각 투자함.
- 3억불 이상 투자가 완료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 조치한 뒤 영업개시 이후 2년 이내에 5억불의 투자를 완료하면 된다고 수용함. 공동투자 측면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9%정도 투자하여 신뢰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버자야 그룹의 역량

- 버자야 그룹은 말레이시아 재계 6위로 동남아에 20개 호텔과 리조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굴지의 호텔리조트그룹임. 그룹의 시가 총액은 5조3,000억원 규모로 국내기업과 비교하면 재계순위 30~40위 정도임.

- 상장기업 15개를 포함해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연매출 3조 7,000억원에 직원만 1만6,000명을 거느리고 있음. 특히 독자적인 항공사를 운영하여 말레이시아 내에는 물론 싱가포르, 태국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한국 시장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 등 외국인들에게는 호텔·리조트 분야에서 유명세가 있음.

□ 민·관 공동 투자자 감동프로그램 수행

- 버자야 그룹 회장과 관련 임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
- 출입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공항심사 우대권' 발행 및 입출국시 공항 VIP 실 상시 이용체계를 구축함.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주요 간선도로를 '버자야로'로 명명함.
- 도내 장거리 이용 시 자치경찰대의 에스코트를 지원함.
- 도청 현관 및 예래동에 말레이시아 국기와 그룹 상징 깃발을 게양함.
- 투자지역 주민들의 공항 환영 주최 및 환영만찬을 개최함.
- 투자자의 종교를 고려하여 착공식에 스님을 초청하여 사업성공 범회를 개최함.

□ 탄스리 회장의 투자의지

- 쿠알라룸푸에 있는 사무실에서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깊은 인상과 흥미를 느껴 제주의 프로젝트가 발전가능성 있다고 판단함.
- 전용비행기로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이미 많은 개발이 이뤄진 마카오보

다 제주의 잠재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음.

- 『버자야 제주 리조트』 출범식에서 제주가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적 도시보다 더 밝은 투자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숨은 보석'이라고 극찬하였음.
- 예래휴양단지조성사업 투자이후 신화역사공원(H지구)에 MOA체결하였고, 2009년 1월에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월엔 합작법인 설립을 예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음.

나. 신화역사공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2014(2011년 1단계 개장)
- 면 적 : 4,043,201㎡(122만평)
- 주요 시설
 - A지구 : 영상 테마파크 지구
 - 첨단기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상테마파크, 워터파크, 숙박시설, 다운타운 탐 모라 등의 시설 도입
 - 2003. 01 : 미국 GHL사와 투자양해각서(MOU)체결
 - 2006. 11 : 미국 GHL사와 MOA 체결
 - H지구 : 식음문화 테마파크 지구(사업내용 확정되지 않음)
 - 세계 각국의 식음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조화시킨 체험 테마파크로서 차이나타운, 유럽존, 미국존, 동남아존 등의 시설 도입

- 홍콩 GIL사 → 말레이시아 버자야사
- J지구 : 신화·역사 테마파크 지구
- 신화와 역사적 요소가 결합된 테마파크로서 Promnade, Corealand, Tamland, World of Legends 등 4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시설물 도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개발할 계획이나, 투자자가 있을 경우 사업 대체.
- 총 사업비 : 약 1조 5천억원

2) 사업추진 사항

- 당초 H지구 투자자인 GIL사는 중국내 석탄사업 활황으로 인한 여유부족을 이유로 MOA 의무이행을 지연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화역사공원 J지구 투자예정자였던 버자야사에게 J지구 대신 H지구 투자를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함.
- 2007년 12월 버자야사와 체결한 신화역사공원 J지구 개발과 관련한 MOA를, H지구 개발에 대한 신규 MOA로 대체함.

<표 III-7>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상황

년도	내용
2006.11	· H지구 개발 관련 홍콩 GIL사와 MOA 체결
2007.12	· J지구 개발 관련 버자야사와 MOA 체결
2008.6	· 버자야사와 사업부지 변경(J지구 → H지구) 협의
2008.6	· 홍콩 GIL사에 MOA 해지 통보
2008.7.28	· 버자야사에 사업부지 변경 및 H지구 개발을 제안하는 공식문서 발송
2008.8.20	· H지구 개발관련 버자야사와 MOA 체결
2009.1-2	· 합작계약 체결 및 합작법인 설립 예정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부자료, 2008.

다. 주요 시사점

1) 투자예정자에 대한 다각적 평가 필요

- JDC는 2008년 7월 28일자로 지난 2006년 11월 홍콩GIL사와 체결했던 신화역사 공원 H지구 투자합의각서(MOA) 해지를 통보했음.
- 홍콩 부동산 에너지전문회사인 페트로컴(Petrocom) 자회사인 GIL은 3억3천만달러를 투자해 안덕면 서광리 일대 404만여 평방m(122만평)에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각 지역의 음식과 중국 전통춤, 용춤 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과 아시아관, 유럽관 등이 들어서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문화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음.
- JDC와 GIL은 2002년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토지확보 문제로 4년간 끌어오다 2006년 11월 17일 2년 시한으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음. MOA는 계약 체결 6개월이내에 액션플랜과 비즈니스플랜,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GIL은 2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JDC가 2008년 6월 최고통지를 보낸데 이어 이에 아무런 답변이 없자 MOA 해지를 통보했음.
- GIL사가 중국에 석탄정화시설사업 등 에너지사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제주프로젝트에 관심을 잃은 게 주원인임.

2)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확보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 JDC와 GIL사의 양해각서(MOU) 체결(2002년 12월)후 토지확보 문제로 4년간 사업이 지연됨.
- 토지확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제한적 토지수용, 토비비축제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제주지역 투자유치 개선방안(기존 연구)

가.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개선 방안 연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개선방안(2008.5)의 연구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투자자(또는 신청 예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도출되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인프라, 행정절차,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표 III-8>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관련 인터뷰 결과

구분	내용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인센티브 동등화 필요 ·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제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해당되며, 국내 민간기업 시행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9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세제감면 혜택 근거가 없음 · 세제혜택기간 연장 필요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개정 필요. 현재의 3년이라는 기간 제한보다는 사업 완공시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금액과는 무관한 일률적인 세제 혜택 · 투자규모 및 내용별로 감면기간 및 감면정도를 조정하는 방안 모색 · 기반시설 지원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시행규칙에 기반시설 지원 내용 명기 · 부담금 측면에서 유인력 미약 · 인천경제자유구역(8개 부문)과 비교하여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음 · PF 지원으로 초기 비용부담의 경감대책 필요 · 지정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지더라도 PF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지구가 아닌 업종 위주 · 일정 구역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내에 투자진흥지구와 부합하는 업종으로 사업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정대상업종 확대 필요 · 구체적인 업종 제약으로 인해 연관업종과의 시너지효과 차단 · 개발사업 시행자 제한 ·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이 제한되어, 국내 대규모 민간기업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 곤란 · 관세면세 대상 물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국내에서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데 혼란 소지 · 사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필요 · 투자진흥지구로 미리 지정이 됨으로써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개선 필요 ·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 저하 · 중소기업의 난립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의제 처리 · 동일지역의 동일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서류의 내용에 큰 차이점이 없으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기간의 장기화 초래 · 사전환경성평가 과정에서 합의 필요 · 사전환경성평가 단계에서 도, 투자자, 환경단체 등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 · 토지수용권 비율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 가중 · 사업 대상지의 2/3 이상을 소유 및 확보해야만 토지 수용이 가능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과의 갈등 야기 및 사업이 지연 · 조성토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 경제자유구역은 조성토지 처분에 대해 개별법, 감정평가, 감정평가액 조건,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도 처분이 가능한 지원제도가 마련됨 · 심의 기준 마련 · 지정에 대한 심의기준(판단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나 조항이 없음. 기업도시의 경우 선정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정확히 제시
관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주체에게 권한 이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담당 · 관리주체인 JDC에게 보다 과감한 권한위임 필요 · 투자진흥지구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사항 부재 · 관리지침이 있으나, 관리카드에 대한 언급만 있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개선 방안, 2008.5.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수립 연구

- 2008년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한 잠재 투자자중 관광산업에 투자의향이 있는 투자자군을 92명으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38명이 응답함.
- 관광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 ‘미래 성장성’이 39.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입지규제’가 28.9%, ‘투자회수 기간’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순위에 대해 28.9%는 ‘조세·금융·고용·기타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인센티브 부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6.3%는 ‘신공항 건설 등 접근성 강화’, 13.2%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구축’, 10.5%는 ‘가장 낮은 법인세 부과’, 7.9%는 ‘관광사업자에 토지수용권 부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9> 투자자 의견사항

구분	분야	투자자 의견 내용
개발영역	개발전략	- 경쟁력 있고 특별한 아이템 선정 필요 - 제주의 특수성을 이용한 관광산업 -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추가 필요
	관광시설	- 크루즈여객선 전용 선석 확보 필요 -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
	개발환경	- 도 전체 주민 및 관 등 전폭적인 지원하는 분위기 필요 - 제주 상주인구가 100만명이 되어야 함
정책영역	관광투자	-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목적지보다 비교 우위 조건이 제시되어야함 - 투자자를 위한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 필요 - 타 지역과 비교되는 투자인센티브 필요
	관광요금	- 가격경쟁력 개선을 중점적으로 실행
	관광행정	- 차별화된 세제지원과 획기적인 사업승인절차 필요 - 적극적인 행정편의 제공 필요 - 원스톱허가 시스템 구축 필요
	교통	- 24시간 운영 공항 등 접근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 조례 제정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항의 신속 확장 정책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신공항 혹은 제2공항 추진
마케팅영역	관광인력	-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및 창의적인 인목을 가진 공무원 필요
	관광인식	- 대외개방에 대한 과감한 마인드 구축 필요 - 관당의식배제 등 외지인에 대한 이질감 해소
	홍보체계	- 안전한 관광지 측면을 부각해야됨 - 투자유치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함
	협력체계	- 제주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활용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수립 연구, 2008.

5. 투자유치상의 과제

-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의 중심점에 있는 제주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인들을 흡수하기 위한 동남아 관문도시인 싱가포르, 홍콩과의 직항로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접근성 부족의 문제가 상존함.
- 제주에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만한 금융·첨단지식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이 부재함.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타 분야의 투자유치도 골고루 이뤄져야함.
- 기존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외에 세계 유일의 '온리원(Only One)'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pioneer status award) 부재함. 단순히 투자금액,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 권한이양·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지원이나, 차별화된 규제완화가 없어 특별한 투자유인책이 미흡함.
- 외국인 투자자가 주택, 콘도를 소유하고 장기간 체류하면서 도내 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함.
- 장기적으로 제주 전지역 경상 및 자본 거래시 자유로운 외환사용을 추진하여 유연한 해외투자자본을 유치함. 제주도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어느 국가와 어떤 통화로도 지불, 송금, 자본거래를 허용함.

IV.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

1. 기본방향

가. 기획유치 추진

-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음. MOU 체결에 따른 신고액에 비해 실제 도착액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사전적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능동적으로 선별·발굴하여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고 투자유치 활동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내어 기획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구체적으로 투자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투자유치 성사를 위해서는 과연 제주도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유치가능성이 높은 타겟 기업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가 필요함.

나.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pioneer status award)가 없음. 리딩컴퍼니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함.
- 토지 및 사무실 문제는 물론이고, 세제상의 혜택, 인력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생활환경 조성 등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과감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투자 유치 유형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 유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또 기 진출기업의 재투자 촉진지원정책은 효율적인 내·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전략이며 이를 위해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법규가 적용 불가능한 사항만 적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법령, 제도, 관행 등 사회적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기준으로 일치성, 투명성, 예측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함.
- 예를들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3항에는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국세의 세목을 이양받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국세를 이양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투자가에 대한 국세 징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건전하고 바람직한 기업환경 조성

- 질 좋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환경이 조성되어야함. 단순한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국내·외 유수의 학교와 병원 유치하여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이 없는 선진수준의 교육과 의료생활환경 마련이 필요함.
- 투자자가 자국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등 제반여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제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함.

2. 투자유치 환경 개선방안

가. 투자유치 전략산업 및 중점 대상국가 선정

1) 투자유치 전략산업 선정

- 제주도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은 국제자유도시 개발 목표에 부합하면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전략을 수립함.
- 제주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지도를 작성하고, 이러한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내·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내·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분야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목표, 내·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실적, 지자체의 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종합적인 고려를 할때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할 구체적인 산업별 중점 유치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교육산업의 경우, 외국대학의 분교, 국제학교, 랭귀지 스쿨, 국제학술 전문기관, 외국인 유학생을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함.
- 의료산업의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산업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외국 전문병원, 의료관광객 등을 중점 유치분야로 선정함.
-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U-IT, 모바일 등 지식기반 제조업의 기업과 연구소를 중점 유치 분야로 선정함
- 글로벌 R&D의 경우, 핵심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핵심적 유치대상으로 글로벌 R&D 거점 마련을 위한 국내·외 유수의 R&D기업과 센터 유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함.
-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상·게임산업의 기업과 연구소를 중점 유치 분야로 선정함.

2) 중점 투자대상 국가 선정

(1) 중동 자본 유치

-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 머니를 축적한 중동 산유국들이 정부가 직접 소유 관리하는 투자기금들을 설립하고 활발한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중동계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 SWF)들이 국제금융의 강자로 주목받고 있음.
- 이들 국부펀드는 종래 미국의 국채 등 선진국의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해왔으나, 최근에는 투자 대상국가와 상품을 전방위적으로 다양화하면서 막대한 해외투자를 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 금융, 유통 등과 첨단 제조업 분야의 노하우 취득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다만, 국부펀드는 민간자본과 달리 단지 상업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기도 하고, 소유지배구조 및 자산운용 실태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대상국의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함.
- 200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개발 회사인 다르알살람홀딩스그룹이 새만금 관광 개발에 거액 투자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음.
- 현지 투자정보를 입수하려면 현지 인맥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유력한 왕족 일가는 물론 정책 입안자와 대표기업(flagship company)의 경영진들과의 인적관계 구축에 주력해야함.
- 2008년 7월 출범한 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⁷⁾의 협력체계 강화도 필요함. 한국 및 아랍 22개국 정부, 양 지역의 기업, 단체 등이 총망라해 출범했으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한국에 투자한 아랍지역 기업체간 모임인 주한아랍상공인협회 창립을 지원하고, 양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단 방문 등의 행사 지원을 하고 있음.
 - 한-아랍소사이어티의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조기에 파악하여 아랍 유력인사와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포럼의 제주 유치를 추진함.
- 중동 오일 머니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7) 2008년 7월 28일 만들어진 외교통상부 등록단체인 비영리 재단법인임. 아랍지역과 경제교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문화적·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워졌음. 아랍연맹회원국 22개와 협력 채널을 갖췄으며 한국측 16명과 아랍측 15명, 총 31명의 이사로 구성됨.

<표 IV-1> 중동 국부펀드(SWFs 실태)

국적	SWF	설립	자산 (달러)	산하조직 및 자회사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1976	8,750억	·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등 다수
	Dubai World	2003	80억	· Istithmar World 등 다수
	Dubai Holdings	2004	120억	· Jumeirah Group · Dubai Group · Borse Dubai · Dubai International Capital 외 다수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Sovereign Wealth Fund	2008	52억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1960 1976	2,500억	· General Reserves · Future Generations Fund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2005	600억	· Qatar Holdings 외 다수
이란	Oil Stabilisation Fund(OSF)	1999	129억	
리비아	Libyan Investment Authority	2007	500억	

자료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14호, 2008.9.5.

(2) 화교자본 유치 강화

- 현재 중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으나,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진출 매력도가 높은 분야에서 투자 잠재력이 있는 큰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 세계기업의 중국 진출이 급증하고 그 중심에 화상이 있음을 감안해 화교기업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6년 특별자치도 시행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의 대부분이 동남아지역에 기반을 둔 화교자본이며,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의 투자유치 동력을 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초청 팸투어를 활성화하고, 화교기업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함.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내 관광·투자홍보사무소를 설치하여 투자유치 업무에 중점을 두되 관광홍보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함.

나. 제도개선 추진

1) 법인세율 인하

- 세계 주요국은 지금 조세경쟁, 특히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태임.
-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법인세율이 약 27.5%에 이르고 있는 상태임.
- 이미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태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의 인하가 필요함.
- 법인세 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임. 아일랜드는 1993년도 약 40%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2000년 24%, 2003년도 12.5%로 인하하였고, 이러한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임.
- 아일랜드는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해 유럽 최저의 동일한 12.5%의 법인소득세를 적용함.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고속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FDI 유입이 증가한다는 다수의 실증 분석 결과가 있음.
- 홍콩, 두바이 등 선발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법인세 제도(12% 일률과세)를 도입을 추진함.

<표 IV-2>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인하 동향

※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인하 동향('08년 기준. 싱가포르는 '07년)
- 영국 30%→28%, 독일 38.65%→29.83%, 싱가포르 20%→18%, 홍콩 17.5%→16.5%, 중국 33%→25%
- 대만도 25%인 현행 세율을 '10년부터 17.5%로 인하계획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3.10.

<표 IV-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주요 국가의 세제상 투자인센티브 비교

구분	국제자유도시	한국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전국)	홍콩 (전국)	중국 (상해푸둥지구)	두바이 (JAFZ)
소득세율	8%~35% (외국 기업인에 17%)	최고 소득세율 : 35% (외국 기업에 한해 17% 단일세율 적용, 또는 소득액 30% 공제 택일)	최고 소득세율 : 20%(0~20%)	최고 소득세율 : 17% (표준세율 15%)	최고 소득세율 : 45%	면제
법인세율	13%~25%	13%~25%	18%	16.5%	25%	면제
법인세 감면 대상	내·외국인 기업	외국기업에 한함 (국내기업 역차별)	EDB가 승인한 국내외 기업 (첨단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 세제감면 없음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음 (업종별로 우대)	-
기타세제인센티브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법인세 등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제조·물류·관광업)	- 선도기업 : 5~15년간 법인세 면제 - 개발확장: 10년간 법인세율 13% 이하 적용 - 생산설비신규투자: 3년간 매년 33.3% 감가상각 허용	없음	하이테크 기업: 15% 우대 세율 (일반기업도 신제품 개발, 신기술연구개발비용이 발생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치 못한 경우 비용 50% 추가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내부자료, 2008.

2) 외국인 투자자와 가족에 대한 영주권 부여 완화

-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제공이 부족함.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른 일반 외국인들과 차별화된 체류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2008년 12월부터 외국인이 투자를 위한 펀드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간접 투자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간접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법무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5인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
- 특별거주 영주권제 도입,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이용자격 부여 등을 시행함.
- 외국인이 주택·콘도 등을 소유하고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투자자로 인정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요건 갖춘 외국인에 대해 제주도에서 장기체류를 허용함. 외국인투자자의 가사보조인 동반입국 요건을 개선함.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 (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포함)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IV-4>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체류조건

구분	내용
사증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제출서류 -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 금액) · 자격별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자(기업체임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임직원인 경우 임직원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 초청자(가사보조인의 고용주)와 피초청자(가사보조인)간 고용계약서 사본 - 초청자(가사보조인의 고용주)의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고용주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3)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로의 변화가 필요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결정함에 따라 상황에 알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함.
- 글로벌 브랜드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조세·금융·고용 기타 인센티브 포괄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5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전략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BT, IT 등 고용창출효과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전략적 분야의 외국기업, 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 유치에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
 - 부지·건물, 초기 운영비 등 패키지 형태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도입함(외국대학 전용단지 조성비·초기운영비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수준(5년간 100%, 2년간 50%)의 조세감면을 추진함.
- 맞춤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효과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구를 고려해 가중 인센티브 부여 등 탄력적으로 운용함.
- 제주도에서도 전략사업분야, 투자대상 등을 고려하여 조세·금융·고용 기타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함.

(4) 토지비축제 확대 시행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가능성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가 시행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협약기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개발사업용 토지 공동 비축체계를 마련함.
- 토지비축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06. 4. 5)되었으며, 2008년도 146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마을소유 토지와 국·공유지이외에 개발이 가능한 사유지를 조사하여 DB화하고, 투자자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의 사유지(예 : 10만㎡)를 소유한 외지인과 도민이 토지정보 제공을 원할 경우 토지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대규모 사유지에 대한 DB 구축(가칭 토지정보은행)을 추진함.
- 개발가능성 있는 토지정보를 취득하여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5) 투자진흥지구

(1) 대상업종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을 현행 21개에서 추가하며, 투자진흥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권 사업 중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 핵심산업으로 추진중인 금융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지정대상 업종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증대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정대상 업종을 물산업(천연광천수, 용암해수사업, 스파·테라피 허브), 금융산업, 물류산업, 농산물가공업 등으로 확대함.
- 중·장기적으로는 내·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을 사실상 폐지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공익에 반하는 사업, 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업,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사업만을 제외하고 모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개정을 추진함.

(2)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확대

- 3단계 제도개선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적용함.
- 또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설하여,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을 추진함.

-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외국인 투자지역’ 이상으로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을 개정하여 법인세·소득세 현행 5년에서 7년 또는 10년간으로 개정을 추진함.
-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연장으로 타 국내·외 도시와 투자유치환경 경쟁우위를 확보함.

(3)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에 의하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장기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자에게는 면제에 대한 실익이 반감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를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로 개정함.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의 실질적 혜택 부여

(4)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토지분 재산세 감면 개시일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 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분재산세 감면일 조정으로 투자자 초기자본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3항 제3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승인일”부터로 개정함.
- 투자자 초기자본 어려움 해소로 투자환경을 개선함.

다. 투자유치 조직 기능 강화

1)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수립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두고 있음.
-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략산업과 국가별로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확대하여 위촉함.
- 수도권 등에 위치한 기업의 이전동향 및 투자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투자권유 등을 통한 도내 기업유치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함.
- 투자유치자문위원의 주요 임무로는 국내·외 기업이전 동향 및 투자정보수집·제공, 기업유치 등임.
- 이에 따른 활동지원금을 월단위로 지원하고, 일정금액 이상 기업유치시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함.
-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 및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위한 기업금융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가속화하는 투자유치보좌관제를 운영함.

<표 IV-5>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사례

※ 전라북도(외자유치자문단)

- 인적 구성
- 위원장은 도지사, 도내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nvest Korea 그리고 법무, 회계, 노무분야의 전문가
- 역할
-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계의 최신 정보 제공 및 정책적 건의
-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경영상 애로사항 제시 및 발전적 해결방안 모색
- IK(Invest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JC) 등 투자유치관련 전문기관들을 통한 외국기업의 권역별, 업종별 장단기 투자동향 및 유치전략 자문
- 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회계, 노무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

2)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조직 기능강화

-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유치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자유치조직을 투자정책과에 신설하거나 별도로 외자유치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계획 수립에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행정처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업무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외자유치전략기획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IR활동을 담당하는 외자유치IR담당, 실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담당하는 외자유치담당, 투자기업에 대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행정지원담당, 유치된 기업이 제주지역에서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후관리담당 등으로 조직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IV-6> 경기도 외자유치 조직 사례

□ 경기도 외자유치 조직

- 국내 지자체 모범사례 지역인 경기도는 투자유치팀이 26명으로 구주반-아주반-미주반의 3개 지역반과 투자정책-투자입지-투자환경의 3개반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계약직 요원은 토상활동 경험 및 외국어로 능통한 자로 선발하고 있음.
- 투자유치팀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한 상담실을 준비해 놓았음.

3) 전략사업 프로젝트별 부서간 통합 T/F팀 구성 · 운영

- 네덜란드는 부처간 프로젝트팀(IPAL : Interministerial Burden Reduction Unit)을 구성해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축소함.
- 현재 투자유치관련 부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투자정책과, 일괄처리팀 등)가 전담하고 있으며, 그 외 부서는 투자유치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지원하는 수준임.
- 특정 부서의 투자유치 업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여러 부서가 관련된 투자유치가 추진될 경우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투자유치 프로젝트별 업무를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음.
- 부서간 상호 소통 및 협력의 결과인 투자유치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상함.

<표 IV-7> 네덜란드의 부처간 프로젝트 팀 사례

□ 네덜란드의 부처간 프로젝트 팀 : IPAL

- 네덜란드 정부는 정부부처간 프로젝트 팀(IPAL : Interministerial Burden Reduction Unit)을 구성해 기업의 행정부담 비용을 축소
- 규제완화 보고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one-stop 기업정보 보고체계 구축, 기업의 창업신고 온라인화,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 일원화 등을 추진해 2003~2006년 중 약 5조원에 이르는 행정부담 비용을 경감함.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 : 소통, CEO Information, 2008.12.3.

4) 내·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 내·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지역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기업이 상호 연계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iLIUP제도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응용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기술혁신기업 허브(Innovation Business Hub)가 되기 위해 첨단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음.
- 이를 위해 사이언스 파크, One-North 프로젝트, Infocomm 21 등의 사업을 해 오고 있음.
- 이 중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는 제도가 다국적기업과 자국기업을 연계하는 iLIUP(Infocomm Local Industry Upgrading Programme)임.
- iLIUP는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 과정을 지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국기업 역시 다국적기업의 기술을 습득,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임.
- iLIUP는 다국적기업과 자국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다국적기업협력사업'(MNC-based Collaboration)과 제품개발에서 시장화에 이르는 단계를 지원하는 'PATH'(Pilot and Trials Hotspot)로 이뤄짐.
- R&D는 물론 상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지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 내·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구개발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줌으로써 내·외국인투자기업과 제주지역 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내·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을 지역기업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라. 국내·외 기업유치 정보 네트워크 강화

1) 국내·외 기업 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 내·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에 대한 홍보나 투자설명회 형태를 벗어나 특정사업별로 목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식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잠재고객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그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첨단기업인 경우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유치대상 기업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건설한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이전대상 기업의 기초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기업 방문상담 및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함.
- 정보분석을 통해 유치대상 기업의 범위가 좁아진다면 해당 기업들의 해외투자 및 글로벌 경영 실패, 생산능력의 확충 압박 등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투자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여 유치대상기업을 예비선정함.

-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지우위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유치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야함.
- 도내이전기업 CEO, 기업지원기관, 투자유치자문역, M&A전문회사 등과 기업유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함.

<표 IV-8> 경상남도의 투자유치 사례

-
- 작은 정보로부터 큰 성과가 탄생한다
 -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마인드가 중요함. A사의 투자정보를 최초로 접하게 된 것은 투자유치과 공무원이 아닌 경상남도청 타 부서의 공무원이었다. 비공식 통로를 통하여 입수한 기업 투자정보를 흘려보내지 않고 투자유치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접촉의 계기가 되어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음.
 - ※ A사 개요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Tomkins Plc의 미국 자회사)에 본사가 있으며 주생산품은 V-벨트, 타임벨트, 유압호스 및 호스커플링(세계 시장 30조원)임. 세계 14개국에 21개 공장을 두고 있고, 종업원 2만 명에 연매출액은 3조9200억원이다. 모회사인 Tomkins Plc는 영국 런던(CEO : Jim Nicol)에 본사가 있으며 연매출액은 5조6000억원이고 종업원은 3만7000명임.
 - 2002년도 경상남도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중·일 합작기업인 RUY Tech의 투자유치 성공사례도 경남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던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옆자리에 앉은 신사분들이 투자지를 찾고 있다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2000만 달러 상당의 외자를 경상남도로 유치한 사례가 있음.
-

자료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월간 지방의 국제화, 2006.

2) 온라인 전문가 투자자문시스템 구축

-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서 국내투자는 언어, 제도,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체계적 정보제공이 중요함.
- 따라서 국내 투자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여러기관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투자유치 홈페이지에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자에게 온라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온라인상에서 외투기업과 외국인 잠재 투자자가 제주도의 투자정보와 사업추진 관련 법적 절차 등에 대해 편

리하게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률, 회계, 특허, 인력채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전문 서비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법인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 또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외투기업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마. 국내·외 기업 생활환경 개선방안

- 생활환경부문에서는 제주도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영어 등 외국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관련 인프라가 정비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방송시간을 확대하면서 기업관련 각종 서류, 민원서류 및 공공서류의 영어판 제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기관 유치

- 투자처 결정시 생활환경이 경제적 환경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요소임.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선진적 교육·의료·주거여건 등이 제공이 필수적임.
-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핵심사업인 국제적 의료기관, 교육기관 유치사업이 원활

히 추진되어야 함.

- 두바이의 경우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물리적,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자녀교육을 위한 79개의 외국인학교가 존재함.
- 국제수준의 주택·교육·의료시설을 구비하여 외국인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
- 현재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제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함.
- 외국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료시설 개선으로 투자유치를 증대함.

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옴부즈만 창구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7월)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전무하였으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투자 등 총 8개사업, 2조6,697억원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었으나, 각종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외국어가 가능한 전담 직원을 투자정책과 또는 일괄처리팀에 배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접수 및 불편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함.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확립으로 인한 투자환경을 개선함.
- 기 투자기업에 맞춤형 A/S를 제공하여 증액투자 유도 및 신규투자를 적극 발

굴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에는 인력고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외국인 및 가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사업으로 외국어로 된 '뉴스레터 발송사업',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바. 도민밀착형 투자유치 강화

1) 투자유치실적에 대한 도민홍보 개선

- 투자유치실적에 대한 합리화·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명확한 정보전달을 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과 투자유치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지역과 관광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확대

- 제주의 농어촌 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산과 하천 그리고 바다를 연계한 자원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당면하고 있는 제주의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관광산업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과 같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에 입주하는 리조트, 숙박시설 등과 지역에서 생산한 식자재와 특산물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1차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함.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식자재를 농어촌에 입주하는

리조트, 숙박시설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식자재 공급에 있어 개별 농어가가 아닌 ‘식자재 공급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공급함.

- 조합은 식자재에 사용되는 원료의 자체 품질평가 실시를 통해 안전한 식자재 공급확대를 도모하며, 식자재가격 협상의 역할을 수행함.
-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청정 상설매장을 개설하여 계절별 생산물들을 방문객들에게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개별 청정상설매장 설치와 리조트와 숙박 시설 등에 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 특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담당자와 특산물 생산업자, 관광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 확보 및 판매형태에 대한 방안마련이 요구됨.

<표 IV-9>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사례

-
- ※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 협약 체결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폴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주배)와 행원리(리장 임상욱), 구좌읍(읍장 이순배)간에 이뤄졌으며,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기업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함.
 - 주요 협약내용은 ‘개발사업 투자계획 및 추진계획에 관한사항’,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자료 :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일괄처리팀, 보도자료, 2008.6.12.

V. 결론

- 성공적인 국내·외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성장은 결론적으로 일관된 정책기조에 대한 강력한 추진으로 귀결됨.
-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최적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교육, 의료 등 국내 생활여건 개선에도 주력함.
- 본 연구는 국내·외, 도내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상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음.
-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투자유치 전략산업 및 중점 대상국가 선정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유치할 구체적인 산업별 중점 유치분야와 중동과 화교자본 유치를 제시함.
- 둘째, 제도개선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자와 가족에 대한 영주권 부여 완화,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토지비축제 확대 시행, 투자진흥지구(대상업종 확대, 인센티브 확대, 입주기업 등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입주기업 토지분 재산세 감면 개시일 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셋째, 투자유치 조직기능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조직 기능강화, 전략사업 프로젝트별 부서간 통합 T/F팀 구성·운영, 내·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함.
- 넷째, 국내·외 기업유치 정보 네트워크 강화방안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전문가 투자자문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함.
- 다섯째, 국내·외 기업 생활환경 개선방안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기관 유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옴부즈만 창구 신설 등을 제시함.

- 여섯째, 도민밀착형 투자유치 강화방안으로 투자유치실적에 대한 도민홍보 개선, 농어촌지역과 관광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확대 등을 제시함.
- 제주도는 현재의 접근성, 관광객 수, 인구 등에서 투자대비 시장수익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주어진 열악한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 투자제도가 도입되어야함.
- 이미 모든 국가와 국내·외 지역에서 투자유치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환경을 고려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은 바로 지자체 및 담당 공무원의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나 의식의 전환도 필요요소임.
-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당분간은 추가적인 투자유치 성과의 실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 제주도민 모두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강원발전연구원, 제조업 투자유치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2006.
- 강원도, 2007 도정백서, 2008.
- 경기도, 2007 도정백서, 2008.
- 경상남도, 2008 도정백서, 2008.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3.10.
-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일괄처리팀, 보도자료, 2008.6.12.
- 경기개발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투자유치 확대 방안-경기도를 중심으로 -, 2007.8.
- 경기개발연구원, 지식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2007.
-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 2007.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환경 개선방안, 2003.10.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14호, 2008.9.5.
- 삼성경제연구소,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CEO Information, 2006.7.19.
- 삼성경제연구소,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 : 소통, CEO Information, 2008.
-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부진과 시사점, CEO Information, 2008.10.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방향, 2006.
- 이계식, “제주국제자유도시, 어디까지 왔나,” 제3회 제주평화포럼 주제발표 자료, 2005.
- 전라남도, 도정백서, 2007.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내부자료, 2008.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2006.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연구, 2007.

Invest KOREA, 한국·싱가포르·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 2007 네덜란드 투자 핵심 가이드, 2007.

허향진,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사례,” 열린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2008.9.4.

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2008.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월간 지방의 국제화, 2007.9.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2007.

충북일보, '외국인 투자유치' 약인가 독인가 ④투자유치의 '허'와'실'-2, 2008년 11월 18일자.

<http://www.investkorea.org>

<http://www.hikorea.go.kr>

<http://www.invest.go.kr/kor/index.jsp>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지방세 감면

시도	감면 내용
서울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1)/산업지원서비스업2)/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부산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조 건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100% 면제
대구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건물토지) 10년간 100%, 3년간 50%
인천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0년간 100%, 3년간 50% ○ 조 건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100%. 재산세 10년간 100%, 3년간 50%
광주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산출세액에 투자지분율을 곱한 금액 전액면제
대전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등록세 100%,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울산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7년간 100%, 3년간 50%
경기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면제
강원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100% 면제
충북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충남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서비스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면제
전북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업용 공장(1천만불이상) 또는 물류업용 공장(5백만불이상)을 새로 설치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전남	○ 조 건 :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 15년간 100% 감면(외국인 투자비용 해당금액)

	- 재산세, 종합토지세 : 15년간 감면(외국인 투자비율 적용)
경북	○조 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의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100% 면제
경남	○조 건 : 고도기술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 15년간 100% 면제 - 재산세: 창원·마산·사천 : 15년간 100% 면제, 그 외 시군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제주	○조건 -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 외투금액 3천만불이상의 제조업 및 신규 공장시설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및 항만배후단지내 물류산업, 공항시설운영사업 및 공항구역내 물류산업, 사회기반시설조성사업 -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불이상 및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신규 연구시설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 1) 이하 고도기술수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제1항제1호에의한 조세감면대상을 의미함
2) 이하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제1항제1호에의한 조세감면대상을 의미함

○ 입지 지원(전용 임대단지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임대)

시도	지원 내용	
서울	공유재산 임대료	○조 건 : 사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 공시지가의 1~5%
	전용재산 임대료	○조 건 : 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투자계획 검토 후 ○임대료 : 100%까지 감면 가능 ○임대기간 : 50년 (50년 연장 가능)
부산	전용단지	○조건 : 전용단지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범위 - 전액감면 : 2천만불 이상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1백만불 이상 - 75%감면 :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50%감면 :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기타	○조건: 고도기술수반산업/산업지원서비스업/시전략산업/연구소/다국적기업지역본부 ○지원범위 : 건물임대료 50% 범위내에서 2년까지
대구	○조 건 : 공유재산 대부, 사용 시 ○지원범위 - 전액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1백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이 100%인 사업 - 75%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이상 2천만불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이 75%이상 100% 미만인 사업 • 외투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 수출하는 사업 - 50%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불이상 1천만불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이 50%이상 75% 미만인 사업 • 외투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 수출하는 사업
인천	<p>○ 조 건 : 공유재산 대부, 사용 시</p> <p>○ 지원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백만불 이상인 사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인 사업 •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75%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광주	전용 단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이면서 첨단고도기술 및 일반제조업 ○ 임대료 : 57원/월/㎡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감면 (50년)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100만불 이상 - 75%감면 (50년) : 일반제조업체의 경우 500만불 이상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조례 규정) ○ 지원범위 : 금후 임대단지 조성 후 임대 예정 (2007. 7월 현재 미 시행)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 이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고도기술수반사업 - 첨단산업4) ○ 임대료 : 조성원가의 1% ○ 감면범위 :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 100%~50% 감면
충북	전용 단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전용단지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외국인투자기업 ○ 임대기간 : 50년 ○ 임대료 : 118원/월/㎡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서 1백만달러 이상 - 75% 감면 : 5백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 충청북도 공유재산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100%~50% 감면
	공유재산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공유재산 임대시 ○ 임대료 :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이나 감면 가능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투자금액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00%감면 : 미화 2천만불 이상인 경우 -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2천만불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인 경우
충남	전용 단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전용단지내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이면서 첨단업종 고도기술업종, 기타제조업 ○ 임 대 료 : 106원 / 월 / ㎡ (임대기간 50년, 10년마다 갱신)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서 1백만달러 이상 - 75% 감면 : 5백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 산업단지개발시행자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임대료 지원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감면: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서 1백만달러 이상, 투자금액 2천만달러이상 1일평균 고용인원 300명이상, 전체생산량 100% 수출, 전체생산량 50%수출과 국내 부품및원자재 조달비율 100% - 75%감면: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 1일평균 고용인원 200명이상 300명미만, 전체생산량 75%이상 100% 미만수출, 전체생산량 50%수출과 국내 부품및원자재 조달비율 75%이상 100%미만 - 50%감면: 투자금액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 1일평균 고용인원 100명이상 200명 미만, 전체생산량 50%이상 75% 미만 수출, 전체생산량 50%수출과 국내 부품및원자재 조달비율 50%이상 75%미만 ○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시 임대기간 : 10년 (연장 가능)
전남	전용 단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전용단지내 외국인투자지분이 10%이상 모든 제조업 ○ 임대료 : 27원 / 월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공유재산을 50년간 수의계약으로 임대 가능 및 임대료 감면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감면: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사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인 사업 - 75%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이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지자체 재정자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50%감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경북	전용 단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전용단지내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모든 제조업 ○ 임대료 : 91/월/㎡(임대기간 : 10년, 50년까지 연장 가능) ○ 감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감면 :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서 100만불 이상 - 75% 감면 : 500만불 이상인 제조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및 공유지 임대료 감면 ○ 지원범위 : 50% ~ 100% 감면
경남	전용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전용단지내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감면범위

		- 전액 감면 : 고도기술/산업지원 서비스업, 1백만불 이상 투자 - 75% 감면 : 제조업, 5백만불 이상 투자
	기타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 100%~50% 감면
제주		○조건 : 공유재산 임대시(임대기간 50년 이내) - 100%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투금액 100만달러이상 사업 • 외투금액 2,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업 - 국내부품(원자재) 조달비율 100% • 외투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 75%감면: • 외투금액 1,000만달러이상 2,000만달러 미만 사업 • 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업 - 국내부품(원자재) 조달비율 75%이상 100%미만 • 외투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50%감면: • 외투금액 5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 • 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전체 생산량의 50%이상 수출사업 - 국내부품(원자재) 조달비율 50%이상 75%미만 • 외투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이상 75%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평동 외국인 투자지역

4) 이하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업을 의미함

5)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

6)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

7) 대불 외국인 투자지역

8)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 입지보조금(분양가 보조금, 용비 매입지 보조금)

시도	지원 내용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시유지 매입 시 ○ 지원 범위 - 매각대금의 연리 4% 수준으로 20년 분할 납부 가능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지역에 신규입주 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로서 상근 연구인력이 5인 이상인 경우 - 다국적기업이 지역에 기능상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한국 본사를 두는 경우 ○ 지원범위 : 매입가격의 30% 이내 	
대구	공유재산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공유재산 매각시 ○ 매각대금 20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 (연 3%) ○ 조성원가 매각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첨단산업관련 서비스업 ○ 지원범위 : 총 투자금액의 50%까지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충족 ○ 지원범위 : 정상분양가와 계약상의 분양가의 차액. 단, 정상분양가의 50% 초과불가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시의 전략산업 ○ 지원범위 : 용지 매입가격의 30% 이내 (총매입가격×30%×지원율) ※ 지원율은 투자업종(10%), 용지매입규모(50%), 고용인원(40%)에 따라 결정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 지원범위 : 정상 분양가와 계약상의 분양가의 차액. 단, 정상분양가의 50% 초과불가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범위 : 정상분양가와 계약상의 분양가의 차액. 단, 정상분양가의 30% 초과불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주주 ○ 지원범위 :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 정상적인 분양가의 50% 이내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범위 : 정상 분양가와 계약상의 분양가 차액, 정상 분양가의 50% 이내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 임대료 차액 (정상 가액의 50%까지), 분양가 차액 (정상 가액의 30%까지)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 정상 분양가의 50% 까지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공유재산 매각 시 ○ 지원범위 : 투자액, 고도기술, 고용인원, 수출비율에 따라 25~100% 까지 차등 감면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 분양가 차액의 50%까지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건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소유 토지를 정상 분양가 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 임대 시 차액 지원 ○ 지원범위 : 분양가 차액 30%미만, 임대료 차액 50%미만 	

○ 고용 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시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가) 당해 외국인투자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인을 초과할 것 (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3년 이상 유지할 것 ○지원 범위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중 20인 초과 1인당 총 6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100 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가) 당해 외국인투자자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인을 초과할 것 (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3년 이상 유지할 것 ○지원 범위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중 20인 초과 1인당 총 6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100 만원 이하 가능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가)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시의 전략산업이면서 신규 20인 이상 고용 (나) 연구소 이면서 연구인력 5명이상 ○지원 범위 - (가)의 경우 20인 초과 1인당 50만원이하 (최고 2억원) - (나)의 경우 기본급의 50%이하의 범위에서 6개월이내 (최고2억원) - (가),(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인초과 1인당 30만원이하 (최고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내국인 50인 이상 고용 ○지원 범위 - (가)의 경우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최고 2억원) - (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기업당 최고 1억원)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 시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역안에서 신설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20인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 ○지원범위 : 20인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 시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역안에서 신설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20인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 ○지원범위 :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후, 교육훈련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개월까지 지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초과시 ○지원범위 :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범위내(기업당 2억원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시 ○지원범위 : 1인당 50만원이내 6개월 (기업당 2억원이내)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신규고용 20인 이상 ○지원범위 : 20인초과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간 (기업당 최고 2억원) ※ 다음 산업의 경우, 지원 조건 완화 :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채용 15명 이상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산업디자인산업, 문화산업, 항공우주산업, 나노기술산업, 가전로봇산업, 차세대전자금융산업, 생명정보기술산업, 첨단노화의료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신규고용 20인 이상 ○지원범위 : 1인당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간(기업당 최고 2억원) ※ 다음 산업의 경우, 지원 조건 완화 : 투자금액 15억원 이상, 신규채용 15명 이상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산업디자인산업, 문화산업, 항공우주산업, 나노기술산업, 가전로봇산업, 차세대전자금융산업, 생명정보기술산업, 첨단노화의료산업 등)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시 관할 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 20명 초과1인당 월 50만원이하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시 관 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 로 고용하기 위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범위안, 기업당 최고 2억원	○지원 : 1인당 50만원이하 6개월 범 위안, 기업당 최고 2억원
울산	○조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 ○지원범위 : 20명초과 1인당 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시 ○범위 : 1인당 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경기	○조건 : 도와 투자협정을 체결하거나 도가 운영하는 임대단지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상시고용하는 경우 ○지원범위 : 3년 범위내에서 신규고용인원 전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최고 기업당 10억이내)	○조건 : 도와 투자협정을 체결하거나 도가 운영하는 임대단지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범위 : 6개월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기업당 10억 이내)
강원	○조건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를 20명 이상 고용 ○지원범위 :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이내 (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조건 :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이상 고용 ○지원범위 : 6개월 범위내에서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기업당 1억원 이내)
충북	○조건 : 도민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지원범위 : 초과 고용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내기업당 10억원 이내	○조건 : 도민 20명 이상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지원범위 :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내. 기업당 10억원 이내
충남	○조건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지원범위 : 20인초과 고용 1인당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 단 기업당 3억원 이내	○조건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지원범위 : 1인당 월 10만원에서100만원까지 6개월 간 지원. 단, 기업당 3억원 이내
전북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지원범위 :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씩 6개월 (기업 당 최고 5억원)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 시 ○지원범위: 1인당 50만원씩 6개월 (기업 당 최고 5억원)
전남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지원범위 : 20명초과 1인당 10-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 시 ○지원범위: 1인당 10-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경북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지원범위 : 20명초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기업당 6억원 이내)	○조건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지원범위: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기업당 6억원 이내)
경남	○조건 : 내국인 20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범위 : 20인초과 1인당 50만원 (기업당 최고 2억원)	○조건 :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 시 ○지원범위: 1인당 10~50만원씩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
제주	○지원조건 - 20인이상 신규채용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 20명초과 1인당 6개월간 100만원/월 이내 (기업당 2억원 미만)	○지원조건 - 20인이상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 1인당 6개월간 100만원/월 이내 (기업당 2억원 미만)

○ 현금지원

시도	지원 내용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규정 충족 - 입지지원,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중복지원 안됨 ○지원범위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의한 조세감면대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을위한 연구개발시설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개발시설 - 기타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용 도 : 건축비, 임대료, 기자재 구입비, 인프라 설치비, 교육 및 훈련보조금 ○지원범위 : 투자금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통해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충족 ○용 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도입,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 법제14조의2의 제1항 규정 충족 ○용 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건축비, 자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불 이상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위한 공장 신·증설 - 1천만불 이상으로 부품, 소재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 5백만불 이상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시설 신·증설 (연구인력 20명이상 고용) ○용 도 : 공장, 연구시설용 토지비, 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 공장, 연구시설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범위 : 최고 50억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불 이상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위한 공장 신·증설 - 1천만불 이상으로 부품, 소재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 5백만불 이상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시설 신·증설 (연구인력 20명이상 고용)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 공장, 연구시설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범위 : 투자유치협상(산자부, 투자자)을 통해 별도결정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 1천만불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5백만불 이상인 연구시설 ○용 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및 인프라시설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지원범위 :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통해 투자금액의 20%내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만불 이상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위한 공장 신·증설 - 1천만불 이상으로 부품, 소재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 5백만불 이상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연구시설 신·증설 (연구인력 20명이상 고용) ○용 도 : 토지매입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건축비, 자재비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투자비(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비 등)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5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투자비의 5%이내), 제주자치도에서 매입하여 임대 제공한 토지매입비를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

○ 용자지원

시도	지원 내용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 - 시설투자금 50억원 이상, 시지역 100명, 군지역 50명 이상 고용 ○용자한도 : 부지매입비의 50%(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무이자)

○ 컨설팅 비용지원

시도	지원 내용
부산	○조 건 -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 연구소 및 다국적기업 지사 ○지원범위 국내소재 컨설팅사 컨설팅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천만원까지
대구	○지원범위 : 타당성 조사비용의 일부 지원
광주	○지원범위 : 투자확정금액의 1%내에서 기업 당 1억원까지
강원	○지원범위 :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범위 안에서 1억원까지. 단 컨설팅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전남	○지원범위 : 컨설팅계약금액의 50% 이내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 시설 보조금

시도	지원 내용
인천	○조 건 :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광주	○조 건 :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 콜센터 :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기업당 1억원 한도
대전	○조 건 :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시 그 비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범위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지원 가능
울산	○조 건 :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강원	○조 건 :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충남	○조 건 :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전남	○조 건 :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경남	○조 건 : 3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원범위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제주	○조 건 : 도로·용수·하수·통신·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국내 기 진출 외국기업 지원

시도	지원 내용
대구	- 본사 및 공장이전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
광주	- 공장시설 이전 시 :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 본점 이전 시 : 본점 근무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2억원까지

○ 특별 지원

시도	지원 내용
대전	○ 조 건 :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R&D 5백만불) ○ 지 원 :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도	외국인 학교(신설, 확장) 사업비 및 운영비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외국인 전용 마을 / 서비스 지원시설)	주택지원
서울	대부분 또는 사용자 : 학생수에 따라 50~100%	-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급 -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을 건립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건립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급	
부산	총 비용의 50%이내		
대구	시설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인천	사업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운영비 각 50%이내	- 사업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건축물매입비)의 20%이내	
광주	총 비용의 50%이내	토지매입비의 20% 이내	
대전	○ 조 건 : 외국인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 원 :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울산	총비용의 50%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 토지매입비의 20%내에서 2억원까지 - 외국인전용주거단지 내에 서비스 지원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20%내에서 2억원 까지 (단, 기존 건축물 매입시는 매입비의 20%내에서 1억원까지)	

충남	총비용의 50%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 토지매입비의 20%내에서 2억원까지. - 서비스지원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20%내에서 2억원까지 (단, 기존건축물 매입시는 매입비의20%내에서 1억원까지)	
전북	예산 범위 내 지원(투자위원회에서 결정)	예산 범위 내 지원 (투자위원회에서 결정)	
전남	- 외국인학교 신축 및 공공시설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하는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까지 지원 - 3년간 운영비지원 기업당 2억원	- 외국인 전용마을 및 서비스지원시설 토지매입비의 25%이내	- 외국인투자 기업종사자를 위한 숙박시설 건립시 건립비의 25%
경남	총비용의 50%이내	영 제2조제5항제2호내지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20%이내에서 2억원까지	
제주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비 (부지매입비 포함) 지원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설립 또는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의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 시설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2.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 		

○ 유공자 포상제도

시도	포상 내용	
서울	<p>○조건 :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법인 및 시·자치구의 공무원</p> <p>○지급규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당 1억원 이내</p> <p>○지급기준</p>	
	외국인투자금액(US \$ 기준)	포상금 지급비율
	1천만 달러 이하	외국인투자 금액의 0.1퍼센트
	1천만 달러 초과~5천만 달러 이하	1만 달러~1천만 달러 초과분의 0.05퍼센트
	5천만 달러 초과~1억 달러 이하	3만 달러~5천만 달러 초과분의 0.03퍼센트
1억 달러 초과	4~5천 달러~1억 달러 초과분의 0.02퍼센트	
인천	<p>○조 건 :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p> <p>○지급규모 : 연간 총 3억원 이내(민간인 2억원, 공무원 1억원)</p>	

울산	○지급대상 :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시 소속 및 구·군 공무원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지급규모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며 1억원 한도이내				
	연간자본 도입금액		지급기준		
	외자 5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외국인투자 금액의 0.04 퍼센트		
	외자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4천불+1천만불 초과분의 0.03 퍼센트		
외자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만6천불+5천만불 초과분의 0.02 퍼센트			
외자 1억불 이상		2만6천불+1억불 초과분의 0.01 퍼센트			
대전	○조 건 :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투자유치자문위원,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지급규모 :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 공무원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				
	지급대상	외자유치금액 (US \$ 기준)	지급 기준	지급산식	비고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위원 개인기업단체	1천만불 미만	0.05%	5천불+1천만불 초과분의 0.04%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 치협약회의 심 의를 통해 지 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
		1천만불 이상	0.04%		
		5천만불 미만	0.03%	2만6천불+5천만불 초과분의 0.03%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0.02%	3만6천불+1억불 초과분의 0.02%			
1억불 이상					
공무원	1억불 이상	0.005%			
광주	지급기준 (만간인)	외자유치금액(US \$ 기준)		지급율	
		1천만불까지		0.06%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		0.05%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		0.04%	
		1억불을 초과하는 부분		0.03%	
경기	○조건 :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지급규모 : 개인, 기업, 단체의 경우 3억원 이내, 공무원의 경우 2억원 이내, 자문료 프로젝트 당 500만원 이내				
강원	○조건 : 강원도 소속공무원 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민간인				
	○지급규모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정				
충북	○조건 :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및 전문가				
	○지급규모 (민간인, 단체 및 전문가)				

	유치금액	지급기준율		
	① 1,000만불 미만	투자유치금액의 0.1%		
	② 1,000만불 이상 ~ 5,000만불 미만	①+1,000만불 초과분의 0.05%		
	③ 5,000만불 이상 ~ 1억불 미만	①+②+5,000만불 초과분의 0.01%		
	④ 1억불 이상	①+②+③+1억불 초과분의 0.005%		
충남	○조건 : 도와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			
	○지급규모			
	유치금액	지급기준	지급액	
	5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유치금액×0.0006	6천\$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6,000불 + 1천만불 초과분의 0.05%	25,500\$미만	
	5천만불 이상 1억불미만	25,500불 + 5천만불 초과분의 0.04%	45,500\$미만	
미화 1억불 이상	45,500불 + 1억불 초과분의 0.03%	170,940\$미만		
	* 공무원의 경우 평가된 성과금의 1/5로 함			
전북	○조 건 : 도와 업무협약 체결한 개인, 기업, 단체 (법인포함)			
	유치금액	지급기준	지급액	
	5백만불 이상 3천만불 이하	유치금액 × 0.001 = ①	최고 1억원	
3천만불 초과	①+3천만불 초과분의 0.05%			
전남	구분	기준		
	지급 대상	· 민간인 및 도, 시·군 공무원 · 기관, 단체		
	지급 금액	유치금액(US \$ 기준)	지급비율	지급액
		1천만 \$ 미만(120억원 미만)	0.1%	미화 10,000 \$ 미만 (12,000천원 미만)
		1천만\$ ~5천만\$ 미만(600억원미만)	0.08%	미화 40,000 \$ 미만 (48,000천원 미만)
		5천만\$ ~1억\$ 미만(1,200억원 미만)	0.06%	미화 60,000 \$ 미만 (72,000천원 미만)
1억\$ 이상(1,200억원 이상)	0.04%	미화 166,000 \$ 이 하(200,000천원 이하)		
경북	○조건 :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및 외국인			
	유치금액	지급비율(%)	지급액(USD) (최고 5억원 이내)	

	~ 1천만불	0.30	천만불 × 0.003
	1천만불~5천만불	0.25	30,000\$ ×(5천만불-천만불)×0.0025
	5천만불~1억불	0.20	130,000\$ ×(1억불-5천만불)×0.002
	1억불 초과	0.15	230,000\$ ×1억불 초과분의 0.15 %
제주	○지급요건 : 1천만불이상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단체·법인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지급규모 : 투자유치 금액 1/1,000이내에서 민간인 5억원이하, 공무원 1억원이하		

연구진

· 연구책임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권 문 호	경기대 관광학 박사
	양 성 수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제주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 쇄 일 2008. 10
발 행 일 2008. 10
발 행 인 허 향 진(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경신인쇄사

ISBN 978-89-6010-076-3 933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